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고려시대 팔관회의 성격 변화와
문인층의 인식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고 수 미

2014년 8월

고려시대 팔관회의 성격 변화와 문인층의 인식

지도교수 全 暎 俊

고 수 미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고수미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8월

**Change of Palgwanhoe's Characteristics and
Awareness of Literary Class in the Goryeo Dynasty**

KO SU-MI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YOUNG-J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14. 8.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hange of Palgwanhoe's Characteristics and Awareness of Literary Class in the Goryeo Dynasty

Palgwanhoe(八關會) is a national ceremony having culture and economic power-integrated comprehensive festival characteristics throughout the Goryeo Dynasty. Palgwanhoe carried out various functions in the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Palgwanhoe's congratulatory ceremony, Joha Ushik(朝賀儀式) and the songs, dances and crafts performed or displayed in the events or banquets organized by the state, Baekhee Gamu(百戲歌舞) included national festival's characteristics, cultural exchange arena and social integration function created by all the subjects' participation amid ruling order, centered on the king. At the basis, Goryeo's pluralistic view of the world was contained, and it had historic function for succession of traditional culture as the characteristics of ancient rituals for heaven and folk beliefs.

Goryeo operated Palgwanbo(八關寶) to secure stable finances for Palgwanhoe, and Palgwanbo functioned as a central organ of the Palgwanhoe. However, national financial income rapidly decreased, due to illegal land possession by temples and those who had power, and subjects' wandering here and there, and Palgwanhoe's excessive spending spoiled Bo(寶: foundation) into high interest-bearing loan. All in all, economic side effects were brought about in the latter part of the Goryeo Dynasty. During the Yuan Dynasty's intervention period, Goryeo's status was degraded from an emperor nation to Yuan's feudal lord nation. Therefore, the status of Palgwanhoe also was degraded, and it was conducted as only simple seasonal event or Buddhist event in temples in some cases.

The change of Palgwanhoe's characteristics made literary people have negative vision on Palgwanhoe in the latter part of the 14th century. Because, moderate reformists wanted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temple within the scope of not disturbing the existing Goryeo's system and order, they did not regard Palgwanhoe itself as a problem. Actually, their focus was on the difficulties of the subjects who had to be burdened from Palgwanhoe expenses and offering tributes. However, radical reformists, based on Neo-Confucianism as the philosophy of reform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started to conduct the correction of Buddhism and Buddhist temple economy's evil effects, which could not become social reform philosophy anymore, in addition to agricultural field system(田制) reform and expulsion of Buddhism. In this manner, they minimized Buddhism's economic basis. In this process, Palgwanhoe's negative aspects were raised, and thus, Palgwanhoe was abolished in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together with the reform of Buddhist temple economy.

目 次

Abstract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법	4
II. 팔관회의 목적과 팔관보 운영	7
1. 팔관회의 목적과 諸 機能	7
2. 팔관보의 운영과 폐단	17
III. 팔관회의 위상 변화와 문인층의 인식	32
1. 팔관회의 경제적 폐해와 위상 변화	23
2. 문인층의 팔관회 인식	30
IV. 결론	45
참고문헌	47

<그림 차례>

<그림 1> 개경 대궐 황성도	10
------------------------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팔관회는 고려 건국과 더불어 고려 초 시기에 걸쳐 중요한 국가의례로 선행되었다. 팔관회의 기원은 인도의 ‘八關齋戒’¹⁾로 재가신도들의 수행을 위한 불교 의식이었다. 이 의식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성격이 변화되어 고려시대에는 고려의 문화가 집약된 종합 축제적 성격의 국가의례로 자리 잡았다.²⁾

팔관회에 관한 최초의 내용은 신라시대의 기록에서 볼 수 있다. 고구려에서 귀순한 승려 혜량의 건의로 551년(진흥왕 12) 불교 교리를 전하기 위해 ‘百座講會’와 ‘八關之法’을 개설하였다.³⁾ 이후 572년(진흥왕 33) 전사한 장병들을 위한 팔관회를 10월에 7일 동안 개최한 기록이 보이는데,⁴⁾ 이때의 팔관회는 위령제적 성격을 띠었다. 또한 645년(선덕왕 14) 3월에 황룡사탑과 관련하여 탑을 완성하고 난 뒤 팔관회를 개최하라는 기록이 보인다.⁵⁾ 이때의 팔관회는 護國의 성격을 띠었다. 신라 왕실은 불교를 왕권의 강화와 안정에 적극 활용하였고, 불교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에 효과적으로 부응하면서 호국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 팔관회 또한 그런 목적에 맞게 시행되었다.

- 1) 八關齋戒는 인도에서 행해진 불교의식의 하나로 ‘八戒齋’, ‘八戒’, ‘八支齋法’, ‘八關齋會’, ‘八關齋’, ‘八齋戒’ 등으로 불리는데 재가신도들이 하루 낮, 하룻밤 동안八戒를 지키는 의식이다. 1.살생하지 말라. 2.훔치지 말라. 3.음행하지 말라. 4.거짓말하지 말라. 5.술을 먹지 말라. 6.꽃다발을 쓰거나 향을 바르고 노래하며, 풍류 잡히지 말고 가서 구경하지 말라. 7.높고 넓으며 크게 잘 꾸민 평상에 앉지 말라. 8.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 등이다. 이 가운데 8은 齋, 나머지 일곱은 戒인데 關은 금한다는 뜻으로 禁慾과 修行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행위였다(출처: 김승동 편저, 『불교사전』, 민족사, 2011, 1128-1129쪽).
- 2) 구미래, 「팔관회의 국가축제적 성격」, 『역사민속학』16, 역사민속학회, 2003; 김혜숙, 「고려 팔관회의 내용과 기능」, 『역사민속학』9, 역사민속학회, 1999; 전영준, 「고려시대 팔관회의 선행과 국제문화교류」, 『다문화콘텐츠연구』8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 3) 『三國史記』 권44 列傳4 居柒夫. “王以亮爲僧統 始置百座講會及八關之法”
- 4)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33年 冬十月 二十日. “爲戰死士卒 設八關筵會於外寺 七日罷”
- 5)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五 宣德王 三月條. “三月 創造黃龍寺塔 從慈藏之請也”
『三國遺事』 권3 塔像 第四 黃龍寺九層塔. “神曰 皇龍寺護法龍 是吾長子 受梵王之命 來護是寺 歸本國成九層 塔於寺中 隣國降伏 九韓來貢 王祚永安矣 建塔之後 設八關會 赦罪人 則外賊不能爲害”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자처한 궁예도 11월에 송악에서 팔관회를 시행하였다.⁶⁾ 하지만 신라에서 시행된 팔관회와는 시기도 다르고 개최목적도 기복을 위한 것이어서 신라의 팔관회와는 어느 정도 성격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이라 칭하면서 신격화 하였고,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것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결속을 위해 그 지역의 토속신들에 대한 제사의식을 모아서 팔관회를 시행하였다.⁷⁾

고려를 창건한太祖는 후삼국 통일 후 민심을 규합하고 각 지방의 호족세력을 비롯한 여러 계층 간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례를 주목하였다. 의례는 집단적으로 설행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하고 동원할 수 있었으며, 단순히 종교행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당시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다.⁸⁾ 태조는 이러한 의례를 매개로 불교와 각 지방의 토착신앙을 융합함으로써 고려의 건국과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계층 간의 정신적 통합을 유도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런 면에서 팔관회는 고려 왕조가 추구했던 여러 가지 기능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례였다.

태조는 불교의 신앙체계 안에 天靈·五嶽·名山·大川·龍神 등 각 지방 토속신앙의 대상들을 포괄하는 팔관회를 건국원년부터 매년 10월에는 서경에서, 11월에는 개경에서 개최하였다. 그런데 天靈·五嶽·名山·大川·龍神 등은 고대의 국가제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토속신들로 祭天의례와도 관련이 있다. 天靈은 제천의식의 대상이었으며, 五嶽과 名山·大川은 山川崇拜의 대상으로, 龍神은 고대의 龍 信仰을 수렴한 것이다.⁹⁾ 하늘에 대한 신앙은 天孫관념에 따라 통치자의 권위를 높여주고 지배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서경은 국방상에 있어서도 북방민족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정치적으로도 고려 왕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징적 근거지로¹⁰⁾ 서경의

6) 『三國史記』 권50 列傳10 弓裔 光化 元年. “戊午 … 冬十一月 始作八關會”

7) 김철웅, 「고려전기 祀典의 형성과정」, 『사학지』37, 단국사학회, 2005, 266쪽.

8)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13쪽.

9) 이민홍, 「高麗時代 漢詩文에 形成된 八關會의 實相」, 『반교어문연구』7호, 반교어문학회, 1996, 118쪽.

10) 河炫綱, 「고려서경고」, 『역사학보』35·36, 1967, 140-143쪽.

팔관회 개최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이기도 했다. 따라서 『宋史』나 徐兢의 『高麗圖經』에서 팔관회를 고구려의 東盟과 관련하여 이해한 것은 고려의 팔관회에 지역적 祭天요소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¹¹⁾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팔관회를 매년 반드시 실행할 것을 당부하였다.¹²⁾ 이에 성종 때 일시 중단된 적이 있지만¹³⁾ 이후 역대 왕들은 이를 준수하여 팔관회는 고려의 국가의례 구조 속에 최상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국가 행사로 자리 잡았고 1391년(공양왕 3) 11월까지 지속되어 고려의 문화가 집약된 국가의례로 기능하였다.

팔관회의 내용과 의례 과정은 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 속에서 온 국민이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국가축제의 성격을 띠었으며 왕을 비롯한 문무백관과 국민들이 함께 즐기는 과정에서 백성들은 ‘고려인’으로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행사 기간 중 펼쳐진 각종 禮樂과 百戲歌舞는 팔관회가 단순한 국가의례가 아닌 고려문화의 결집체였으며 고려 문화를 유지해가는 핵심적 장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 간섭기를 거치면서 팔관회는 점차 단순 축제인 절기행사로 위상이 하락하면서 점차 그 기능을 잃게 된다. 팔관회의 쇠퇴는 대몽항쟁기를 거치며 원의 제후국으로 전락한 후, 元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천하관의 등장과 재정악화, 寺院경제의 폐단,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신진관료들의 개혁의지와 斥佛論 대두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려후기 팔관회의 성격 변화와 위상의 하락을 무인집권기와 원 간섭기 경제적 폐해와 관련하여 살펴 본 후 고려후기 문인관료층의 팔관회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다. 무인집권기는 무인들의 권력독점으로 인해 왕권이 약화됨과 더불어 사회의 주도세력이 문인에서 무인으로 교체되었다. 문인들의 정치·사회적 기반이 약해졌다고는 하나 무인들의 필요에

11) 『高麗圖經』 권17 祠宇. “十月東盟之會 今則以其月望日具素饌 謂之八關齋 禮儀極盛”; 『宋史』 권487 高麗. “歲以建子月祭天 國東有穴 號歲神 常以十月望日迎祭 謂之八關齋 禮儀甚盛 王與妃嬪登樓 大張樂宴飲 賈人曳羅爲幕 至百疋相聯以示富”
 12) 『高麗史』 권2 世家2 太祖 26년. “其六曰 朕所至願在於燃燈八關... 君臣同樂宜當敬依行之”
 13) 『高麗史』 권3 世家3 成宗 6년 11월條. “冬十月命停兩京八關會”

의해 등용된 문인들이 존재했고, 이들은 여전히 고려사회 지식인층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¹⁴⁾ 그리고 원 간섭기 이후 元을 천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원적 천하관으로의 변화와 더불어 원 주자학의 영향을 받은 신진 세력들과, 고려 말 사회개혁을 주도하며 불교계의 폐단을 비판하고 척불론을 제기했던 문인들 등, 당시의 지식인층이었던 문인들이 국가의례로 선행되었던 팔관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고려시대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방법

팔관회를 다룬 선행연구는 몇 가지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팔관회를 불교의례의 관점에서 본 연구가 있다. 安啓賢은 『八關會攷』¹⁵⁾에서 팔관회를 불교의례에 각 지역의 토속신들에게 지내는 제사를 합하여 행해졌으며, 고대부터 내려오는 추수감사제의 성격을 지닌 문화축제이며, 신라의 화랑적 요소와, 고구려의 조상제사의 요소가 포함된 복합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강조하였다. 그의 연구는 불교사 관점에서 불교행사로만 연구되어 온 팔관회의 성격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는 燃燈會 · 八關會 · 帝釋道場 등 불교행사와 관련하여 고려에서 행해졌던 국가의례들에 대한 불교적 요소와 사회적인 기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룬 연구가 있다.¹⁶⁾ 그리고 팔관회를 불교행사가 아닌 우리나라 고유의 제천 의식과 중세 禮樂사상의 맥락에서 연결 지어 바라본 연구가 있으며¹⁷⁾ 또한 팔관회를 세시의례의 하나로 접근한 연구가 있다.¹⁸⁾ 한국 예술사의 범주에서 팔

14) 장숙경, 「고려 무인정권하 문사의 동향과 성격」, 『한국사연구』84호, 한국사연구회, 1981, 53쪽; 김호동, 『무인집권기 문인층의 현실인식』,

15) 安啓賢, 「팔관회고」, 『동국사학』4, 1956; 『한국불교사상사연구』, 동국대출판부 재수록, 1983.

16)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김형우,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3.

17) 이민홍, 「고려조 팔관회와 예악사상」, 『대동문화연구』3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5; ____, 「고려시대 漢詩文에 형성된 팔관회의 실상」, 『반교어문연구』7호, 반교어문학회, 1996.

18) 김혜숙, 「高麗 八關會의 內容과 機能」, 『역사민속학』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1999.

팔관회에서 설행되었던 백희가무에 주목하여 팔관회의 음악과 춤 등 여러 가지 공연에 관한 양상과 의의를 찾은 연구가 있다.¹⁹⁾ 그리고 팔관회와 신라 고유의 종교였던 풍류도와의 연관관계를 전통사상의 연계 속에서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²⁰⁾ 불교를 중심으로 신라의 불교와 고려의 불교를 비교하여 불교사상이 연속적으로 계승되는 부분과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신라와 고려 불교가 각각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부문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있다.²¹⁾ 팔관회의 의례절차 중 외국인 조하의식과 관련하여 당시 고려와 주변국가와의 국제 무역과 교류에 대해 다룬 연구가 있으며²²⁾ 팔관회의 축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고대축제의 원형을 찾고 현재 축제문화콘텐츠로의 부활 가능성을 언급한 연구가 있다.²³⁾ 팔관회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고려전기와 후기 천하관 변천과 관련하여 팔관회를 다원적 천하관과 연결하여 본 연구가 있다.²⁴⁾

지금까지 고려의 팔관회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고려 전기에 설행되었던 팔관회에 집중되어 있다. 신앙과 관련하여 불교의례였는지, 우리나라 고유의 제천의례였는지 그 성격을 논하거나, 다원적 천하관의 입장에서 팔관회 조하의식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였다. 그리고 고려의 문화적 요소인 百戲歌舞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례절차에서 보이는 팔관회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다원적 천하관과 국제적 성격을 드러냈던 전기의 팔관회가 고려 후기로 오면서 주변세력과 천하관의 변천, 그리고 사회상의 변화와 더불어 일정 정도의 성격 변화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
- 19) 김효분, 「연등회와 팔관회의 무용사적 의의에 관한 고찰」, 『한국무용연구』제16집, 한국무용연구회, 1998; 「팔관회에서 연행된 춤 연구」, 『한국체육학회지』제40권 제4호, 한국체육학회, 2001; 김창숙(曉吞), 「불교적 연희의 개최와 그 양상」, 『한국불교학』제38집, 한국불교학회, 2004; 김원화, 「선유락을 통한 가무백희 연구」, 『한국체육학회지』제50권 제4호, 한국체육학회, 2011.
- 20) 도광순, 「팔관회와 풍류도」, 『한국학보』21집, 일지사, 1995.
- 21) 김복순, 「신라와 고려의 사상적 연속성과 독자성」, 『한국고대사연구』54권, 한국고대사학회, 2009.
- 22) 전영준, 「고려시대 팔관회의 설행과 국제문화교류」, 『다문화콘텐츠연구』8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 23) 장은영, 「고려 팔관회의 관광축제 특성」, 『관광학연구』제28권 제2호(통권47호), 한국관광학회, 2004.
- 24) 노명호,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105호, 한국사연구회, 1999; 추명엽, 「고려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현실』43호, 한국역사연구회, 2002; 채웅석, 「원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 『역사와현실』49호, 한국역사연구회, 2003; 박경안, 「고려전기 다원적 국제관계와 국가·문화 귀속감」, 『동방학지』129호, 연대국학연구원, 2005.

그리고 사회 구성원의 한 축을 담당했던 당시 문인들의 팔관회에 대한 인식 또한 고려 후기로 오면서 사회상의 변화와 더불어 달라진다. 팔관회는 국가에 의해 설행되었던 국가의례였던 만큼 당시 관료층이었던 이들이 그 시대 팔관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아보는 것 또한 팔관회의 변화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II장에서는 고려전기 왕실은 팔관회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으며 팔관회는 어떤 기능으로 그에 부합했는지 정치·사회·경제적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팔관회의 재원마련과 관련하여 팔관보의 운용과 폐단에 대해 살펴보겠다. III장에서는 고려후기 팔관회 설행에 따른 경제적 폐해와 양상을 통해 팔관회의 위상 하락과 성격 변화에 대해 살펴본 후, 당시 문인관료층의 팔관회 인식에 대한 변화 원인을 시기별로 나누어 사회상의 변화와 더불어 살펴보겠다.

II. 팔관회의 목적과 팔관보 운영

1. 팔관회의 목적과 諸 機能

1) 팔관회의 정치·사회적 기능

태조는 고려 건국 후 후삼국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분열적인 정서를 ‘고려인’이라는 일체감으로 통합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다. 이에 사회문화적 통합매체인 불교와 도교, 각 지역의 토속신앙을 아울러 신라와 태봉에서 시행했던 팔관회를 계승함으로써 문화적 연속성을 지속시킴과 동시에 일체화 된 정서를 이끌어 내하고자 하였다.²⁵⁾

고려의 팔관회는 918년(태조 즉위년) 11월에 처음 시행되어²⁶⁾ 고려의 쏠 시기동안 국가의례로 설행되었다. 태조 왕건은 『訓要十條』의 여섯 번째 조항에서 팔관회를 국가의 공식행사로 지속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했다.

나의 지극한 바램은 燃燈과 八關에 있다.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은 하늘의 神靈과 五岳·名山·大川·龍神을 섬기는 것이다. 후세에 간신들이 더하거나 줄일 것을 건의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할 것이다. 나도 당초에 이 모임을 국가 기일과 상치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기로 굳게 맹세했으니 마땅히 받들어 시행하도록 하라.²⁷⁾

라고 하며 팔관회를 ‘供佛樂神之會’라 정의하였다.²⁸⁾ 이는 팔관회를 우리나라 고유의 토속적 신앙요소를 모두 포함한 국가의례로 만들하고자 하였으며 해마다 국가행사로 상례화하여 지속적인 의례를 통해 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를 유지하고 통제하려는데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또한 팔관회를 ‘天靈·五嶽·名

25) 안지원, 앞의 책, 2005. 144-145쪽.

26) 『高麗史』 권1 世家1 太祖 원년. “十一月 始設八關會 御儀鳳樓觀之 歲以爲常”

27) 『高麗史』 권2 世家2 太祖 26년 4월. “朕所至願 在於燃燈八關 燃燈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 名山大川龍神也 後世姦臣建白加減者切宜禁止 吾亦當初誓心 會日不犯國忌 君臣同樂 宜當敬依行之”

28) 『高麗史節要』 권1 太祖 神聖大王 戊寅 원년. “十一月 設八關會… 王御威鳳樓 觀之 名爲供佛樂神之會 自後歲以爲常”

山·大川·龍神을 섬기는 것'이라며 토착신앙의 내용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지방 호족들의 세력을 왕을 중심으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었던 태조가 각 지방의 토속신앙의 대상을 중앙으로 일원화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문화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²⁹⁾

팔관회는 982년(성종 1) 백희가무가 번잡스럽고 인력과 경비가 많이 든다며 잠시 폐지되었지만³⁰⁾ 1010년(현종 원년) 崔沆의 건의로 다시 부활한 후³¹⁾ 본격적으로 고려사회에 정착해갔다. 현종대는 고려 국가제도의 틀이 완성되었던 시기로 이후 국가의 상황에 따라 행사의 규모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고려 말까지 연중행사로 계속 설행되었다.

팔관회는 서경과 개경에서 각각 개최되었는데 서경의 팔관회는 10월에 설행되었고, 개경의 팔관회는 11월 14·15일 이틀간 설행되었다. 서경의 팔관회를 10월에 개설한 것은 고구려의 국가제사였던 東盟祭를 잇는 것이며 아울러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의미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진정책을 표방하고 국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행위였다.³²⁾ 왕이 직접 거동을 하지 못했을 시에는 宰相을 파견하여 齋祭를 거행하였다. 묘청의 난 이후 三品官을 보내기도 하였지만, 명종 11년부터 다시 재상을 파견하였다.³³⁾

팔관회의 의례 절차는 1035년(정종 원년)에 정형화되었다.³⁴⁾ 팔관회는 국왕이 주체가 되는 국가의례였던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 설행되었으며, 고려의 국가의례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관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習儀'라는 예행연습을 하였다. 예종 때는 팔관회 習儀를 할 때 추밀원에서 배설한 연석 차림이 정도를 초월하여 臺官이 그 일을 담당한 別駕

29) 김효분, 「팔관회에서 연행된 춤 연구」, 『한국체육학회지』제40권 제4호, 한국체육학회, 2001, 583 쪽.

30) 『高麗史』 권3 世家3 成宗 즉위년 11월. “是月 王以八關會雜技 不經且煩擾 悉罷之 幸法王寺 行香 還御毬庭 受群臣朝賀”; 『高麗史』 권3 世家3 成宗 6년 “冬十月 命停兩京八關會”

31) 『高麗史』 권4 世家4 顯宗 원년 庚寅. “復八關會 王御威鳳樓 觀樂”

32) 『高麗史』 권2 世家2 太祖 26년. “我太祖即位之後 金傅未賓 甄萱未虜 而屢幸西都 親巡北鄙 其意亦以東明 舊壤爲吾家青氈 必席卷而有之”

33) 『高麗史』 권100 列傳13 崔忠烈. “舊制 燃燈八關 必遣宰相至西京 攝行齋祭 自甲午之變 西京有事 詔停遣使 後只遣三品官 … 王揣知其意 遣忠烈如西京 行八關會”

34) 『高麗史』 권6 世家6 靖宗 즉위년 庚子. “設八關會 御神鳳樓 賜百官醕 夕幸法王寺 翼日大會 又賜醕 觀樂 東西二京 東北兩路兵馬使 四都護 八牧 各上表陳賀 宋商客 東西蕃 耽羅國 亦獻方物 賜坐觀禮 後以爲常”

를 붙잡아 가두었다는³⁵⁾ 기록으로 보더라도 팔관회를 치루기 위한 준비과정 또한 본 행사 못지 않았던 것 같다.

의례과정 중에는 신하들의 의무적인 八關賀表 奉呈 의식과 외국인들의 조하 의식이 정례화 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왕권을 과시하고 지배층 내부의 질서를 재확인 시켜 사회질서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 기능이 강조되었다. 팔관회가 다가오면 각 지방의 지방관들은 하표를 작성하고³⁶⁾ 진상할 공물들을 준비하여 봉표원을 파견하였으며 중앙의 문무백관과 함께 팔관회에 참가하였다. 賀表를 올리지 않은 지방관은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³⁷⁾ 이는 개경을 중심으로 한 고려의 지방제도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지방의 토속신앙의 대상들을 모아 중앙에서 일원화하여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도 있어서 공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백성들은 공물준비에 대한 부담도 있었겠지만 국가행사에 같이 참여한다는 의식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팔관회는 자연스럽게 중앙과 지방의 일반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이 참여하는 국가의례가 될 수 있었다.

팔관회는 11월 15일을 전후하여 14일은 小會日행사, 15일은 大會日행사를 거행하고 16일 하루 동안은 쉬도록 하는 3일간의 일정으로,³⁸⁾ 팔관회의 의례는 전날인 小會日과 당일 날인 大會日로 나뉘어 이틀간 진행되었다. 小會日에는 왕이 法王寺로 행차하여 太祖眞展에 분향하는 의식을 시작으로, 돌아와 毬庭에서 신하들의 賀禮를 받고 이어 獻壽, 지방 관리들의 축하선물 奉呈, 歌舞百戲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大會日 역시 관료들의 獻壽와 외국 사신들의 朝賀를 받고 하사품을 내렸으며 歌舞百戲를 관람하였다.³⁹⁾

小會日의 의례와 백희가무 공연이 끝나면 왕은 법왕사에 행차하여 분향의식을 하였다. 법왕사는 개경의 皇城 안에 축조된 사원으로 팔관회를 비롯하여 궁중연회와 齋會의 무대공간으로 활용되었다.⁴⁰⁾ 고려시대 寺院은 공공의 장소

35) 『高麗史』 권97 列傳10 韓安仁. “... 八關習儀 樞密院果卓踰制 臺官囚執事別駕 ...”

36) 『高麗史』 권10 世家10 宣宗 3년. “冬十月 甲辰 命內外官 表賀太后生辰 且於正至八關 亦如之 永爲定制”

37) 『高麗史』 권102 列傳15 李奎報. “八關會有關賀表者 奎報欲彈 琴儀固止 忠獻聞而劾之 貶奎報爲桂陽副使”

38) 『高麗史』 권84 志38 刑法1 公式 官吏給暇. “八關 十一月十五日 前後并三日”

39) 『高麗史』 권69 志23 禮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40) 최윤영, 「한국 중세 궁중연회의 공간 연구」, 『한국연구학』27, 2005,11, 311쪽.

있도록 좌석이 배정되었다.⁴³⁾ 국왕은 의봉문루에서 구정에 도열한 모든 군신들로부터 朝賀를 받은 후 獻壽와 賀詞를 반복하며 연회를 하였으며 태자 이하 宗臣들과 중앙의 문무백관이 위계에 따라 하례를 올린 후에 지방관들이 파견한 관원들이 팔관회를 경축하는 하표를 올리고 조하하였다.

이러한 의례과정은 군신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고려의 국가적 질서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팔관회는 이 범위를 확대하고 고도로 의전화함으로써 왕의 정치적 권위를 더욱 강화하였다.⁴⁴⁾ 즉 왕을 정점으로 한 일원적 질서 체계를 분명히 하고 국왕의 권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공고히 하는 정치적 기능을 하였다.

팔관회의 외국인 조하의식에서는 고려의 대외인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원적 천하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원적 천하관은 고려도 천하의 중심일 수 있다는 자주적이고 개방적인 천하관으로 고려·송·요·금이 서로 공존하며 대립한 고려 전기와 중기에 주류를 이루었다.⁴⁵⁾ 이는 고려의 외교정책에도 반영되었으며 팔관회의 조하의식을 통해 구현되었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皇帝國’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주를 ‘황제’라 칭하며 주변국가에도 ‘海東天子’·‘大金皇帝’·‘宋朝天子’라 하여 宋·遼·金 등의 천자들과 병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황제’·‘천자’라는 휘호가 자연스럽게 사용되었으며 각각의 小天下들은 각기 자연적 풍토가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성품이나 문화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⁴⁶⁾ 태조는 「훈요 10조」에서

우리 동방은 오래 전부터 중국 풍습을 본받아 문물 예악 제도를 다 그 대로 준수하여 왔다. 그러나 지역이 다르고 사람의 성품도 각각 같지 않으니 구태여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거란은 짐승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가 다르니 그들의 의관 제도를 아예 본받지 말라.⁴⁷⁾

43) 안지원, 앞의 책, 2005, 116쪽.

44) 한국역사연구회, 『고려의 황도 개경』, 창비, 2002, 236-237쪽.

45) 盧明鎬, 「高麗時代의 多元의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105, 한국사연구회, 1999, 5-6쪽.

46) 盧明鎬, 앞의 글, 27-28쪽.

47) 『高麗史』 권2 世家2 太祖 26년 4월. “惟我東方 舊慕唐風 文物禮樂 悉遵其制 殊方異土 人性各異 不必苟同 契丹是禽獸之國 風俗不同 言語亦異 衣冠制度 慎勿效焉”

라며 고려의 독자적인 문물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고려의 왕들은 스스로를 ‘朕’이라 했고, ‘六曹’를 ‘六部’로, 국가의 공식행사에서는 ‘千歲’가 아닌 ‘萬歲’를 사용했다. 이는 황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로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은 원의 제후국으로 국가의 위상이 격하되기 전까지 줄곧 지켜져 왔다. 이는 팔관회의 조하의식에서 올린 賀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⁸⁾

「팔관치어」

- 1) 넓은 뜰에 새벽부터 미리 문·무반을 재촉하여 정렬시켰고,
- 2) 임금께서는 玉輦을 타시고 구중궁궐에서 천천히 내려오셨사옵니다.
- 3) 日月은 바로 黃道 위에 임하옵고 星辰은 높이 紫薇 사이를 향하옵니다.
- 4) 하늘을 울리는 아악은 三清의 곡이요,
- 5) 땅을 뒤흔드는 환성은 만세의 태산이옵니다.⁴⁹⁾

위의 치어는 의종 때의 문장가 임종비가 올린 「八關致語」이다. 1)은 문반과 무반이 毬庭에 정렬해 있는 모습이고, 2)는 임금의 鑾駕出宮 모습, 4)는 구정에서 三清曲(玉清·上清·太清)을 연주하는 모습으로 三清은 上帝가 사는 하늘을 뜻한다. 5)는 이 광경을 보고 참석자 모두가 환호하는 모습으로 팔관회가 군신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의례였음을 알 수 있다.⁵⁰⁾

이 외에도 현재 전하지 않지만 金富侁이 팔관회 행사에서 쓰는 致語口號를 지었는데 예종이 그것을 읽고 대단히 기뻐하면서 앞으로는 이 글을 언제나 사용하고 바꾸지 말라는 명령까지 하달하였으며 그 문장의 우수함이 송나라까지 알려졌다고 한다.⁵¹⁾ 그리고 주변국과의 국제관계를 적극 활용하여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려 영역 밖에 있는 송·여진·탐라 등에서 방물을 바치는 외국인 조하의식을 통해 고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왕권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⁵²⁾ 즉 고려의 팔관회가 단순한 축제적 성격에서

48) 대표적으로 郭東珣, 「八關會仙郎賀表」; 金富軾, 「賀八關會表」; 李崇仁, 「賀八關會表」, 『東文選』 권31·32; 權近, 「八關賀箋」, 『陽村集』 권24 등이 있다.

49) 『東文選』 권104 致語. 「八關致語」, “廣庭先曉預催班 玉輦徐徐下九關 日月正臨黃道上 星辰高拱紫薇間 掀天雅樂三清曲 動地權聲萬歲山”

50) 윤광봉, 「고려 팔관회 의식에 나타난 연희 양상」, 『팔관회의 복원과 현대적 계승』,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2012, 47-48쪽.

51) 『高麗史』 권97, 列傳10 金富侁. “嘗製八關致語口號 睿宗覽之大悅 詔常用勿易. 宋樂人夔中立來投爲樂官 及歸誦其辭於帝前 後李資諒入朝 帝問 八關致語口號誰之所製 雖有僭語 誠嘉章也”

52) 추명엽, 「고려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현실』43, 한국역사학회, 2002,

벗어나, 국왕을 정점으로 한 관료들간의 질서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고려와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을 위한 국제적 행사의 하나로도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팔관회 때 국왕은 죄인을 사면하였고, 조세를 줄여 주었으며, 관직과 음식을 하사하는 등 다양한 시혜를 베풀었다. 이런 조치와 과정은 팔관회가 지니는 사회통합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국가는 팔관회를 왕실행사로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고 종합적인 축제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11월에 八關會를 베풀었다. 유사가 아뢰기를, “전대의 임금의 해마다 仲冬에 八關齋를 크게 베풀어서 복을 빌었으니 그 제도를 따르소서.” 하니, 왕이 이르기를, “짐이 덕이 없는 사람으로 왕업을 지키게 되었으니 어찌 불교에 의지하여 국가를 편안하게 하지 않으리오.” 하고 毬庭의 한 곳에 輪燈을 설치하고 香燈을 곁에 벌여 놓고 밤이 새도록 땅에 가득히 불빛을 비추어 놓았다. 또 채봉을 두 곳에 설치하였는데 각각 높이가 5장 남짓하고 모양은 蓮臺와 같아서 바라보면 아른아른 하였다. 갖가지 백희가무를 그 앞에서 벌였는데 四仙樂部の 龍·鳳·象·馬·車·船은 모두 신라의 고사였다. 백관이 도포를 입고 笏을 들고 예를 행하였으며, 구경하는 사람이 서울을 뒤덮어 밤낮으로 즐기었다. 왕이 몸소 위봉루에 나가서 이를 관람하고 그 명칭을 ‘供佛樂神之會’라 하였는데, 이 뒤로부터 해마다 常例로 삼았다.⁵³⁾

라며 팔관회 실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다.

조하의식이 끝나면 백희가무가 베풀어졌는데 참여한 모든 이들이 술과 음식을 나누며 당대 최고 兩部 악관들의 음악과 敎坊의 가무, 百戲를 감상하고 즐겼다. 이규보는 八關賀表에서 팔관회를 ‘與民同樂’⁵⁴⁾이라 하여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눈다고 하였다. 이는 ‘供佛樂神之會’라는 팔관회 본래의 기능에 충실함과 동시에 참여자들로 하여금 출신지를 초월하여 고려인으로서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하였다. 이때에는 毬庭이 개방되어 일

23-35쪽.

53) 『高麗史節要』 권1 太祖神聖大王 戊寅 원년. “十一月 設八關會 有司言 ‘前王每歲仲冬 大設八關齋以祈福 乞遵其制’ 王曰 ‘朕以不德 獲守大業 盍依佛教 安輯邦家’ 遂於毬庭 置輪燈一所 香燈旁列 滿地光明徹夜 又結綵棚兩所 各高五丈餘 狀若蓮臺 望之縹緲 呈百戲歌舞於前 其四仙樂部 龍鳳象馬車船 皆新羅故事 百官袍笏行禮 觀者傾都 晝夜樂焉 王御威鳳樓 觀之 名爲供佛樂神之會 自後 歲以爲常”

54)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권 제12 表 敎坊八關賀表. “云云 率祖攸行 講八關之嘉會 與民同樂 均萬國之權心 喜洽神祇 慶騰朝野 …”

반 백성들도 궁성 안으로 들어와 화려하게 가설된 무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으며 ‘구경하는 사람이 서울을 뒤덮어 밤낮으로 즐기는 광경’을 연출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팔관회는 고려 사람들의 문화 축제이기도 했다.

팔관회에서 이루어진 百戲歌舞의 예술적·유희적 요소는 일반 백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팔관회의 축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군신과 일반 백성들 간의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演戲에는 祈穀祭와 추수감사제 같은 농경 의례적 요소 그리고 고대의 제천의례와 토속 신앙적 내용이 포함되어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역사적 기능도 갖고 있었다. 즉 팔관회는 계층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유지하고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君臣과의 상하관계와 주변국과의 질서체계를 드러내기 위한 문화적 장치였다.⁵⁵⁾ 이런 諸 기능들은 팔관회가 무신집권기와 江都市기 그리고 원 간섭기를 거쳐 고려 말 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2) 팔관회의 경제적 기능

고려는 국가행사의 수행을 통해 주변 국가와의 교역이 이루어 졌는데 팔관회는 국제무역의 활성화라는 경제적 순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팔관회를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적 기능과 시장의 활성화가 그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팔관회는 고려의 위상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동아시아의 질서체계를 구현하는 축제로 기능하였다. 당시 국제질서는 고려를 중심으로 송·거란·여진이 자리 잡고 서로 견제하는 상황으로 고려의 대외교류는 동북아시아의 각국을 대상으로 해상과 육로를 통해 활발하고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개경의 국제무역항인 벽란도를 중심으로 탐라를 비롯한 송·일본·거란·여진·아라비아 등 국가 간의 교역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송상들과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그들의 운항은 계절풍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주로 서남계절풍을 이용하여 7~8월에 내항해서 팔관회를 거친 후 11월 북풍을 이용하여 돌아갔다.⁵⁶⁾

55) 金昌淑(曉吞), 「佛敎的 演戲의 개척과 그 양상-연등회·팔관회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제 38집, 한국불교학회, 2004, 152쪽.

고려는 이런 국제적 무역관계를 이용하여 1035년(정종 즉위년)부터 팔관회의 외국인 조하의식을 상례화 시켰다. 팔관회의 외국인 朝賀의식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A-① 합문관이 송나라 綱首 등을 인도하여 문사위에 가 선다. 합문관은 왕에게 “송나라 都綱 아무개 등이 조하 드립니다.”라고 아뢰고, 합문이 절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꿇어 앉아 예물 목록을 봉정하게 한다. 이어 사인의 구령에 따라 두 번 절하고 그 중 우두머리가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만세를 부르고 다시 두 번 절한 후 앞으로 나섰다가 물러나 자리로 돌아가서 만세를 부르고 두 번 절한다. … 이어 동서 蕃子와 耽羅 사람들을 차례로 인도해 조하와 국왕의 분부를 전하는 예는 모두 송나라의 綱首에게 행하는 의례와 동일하다.⁵⁷⁾

A-② (1035년) 경자일에 팔관회를 열고 왕이 위봉루에 나가서 여러 관리들을 위하여 주연을 베풀고 저녁에는 법왕사로 갔다. 이튿날 대회에서 다시 주연을 베풀고 악을 관람하였다. 이때에 동서 2경과 동북 양도 병마사와 4도호부와 8목에서 각각 표문을 올려 축하하였으며, 송나라 상인들과 동서 여진과 탐라국에서도 토산물을 바쳤다. 그들에게 좌석을 주어 의식에 관람하게 하였다. 그 후부터 이것이 상례가 되었다.⁵⁸⁾

A-③ (1040년) 11월 병인일에 大食國의 상인 保那盖 등이 와서 수은, 용치, 점성향, 몰약, 대소목 등 각종 물자를 바쳤다. 해당 관원에게 명령을 내려 그들을 객관에서 후하게 접대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이 돌아 갈 때에는 금과 비단을 후하게 주었다.⁵⁹⁾

A-①은 외국인 조하의식의 의례절차로 민간무역에 종사하는 宋商들이 경제사절단처럼 팔관회에 참석했으며 여진과 탐라 외에 서역도 고려에 객사를 파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6) 김동철, 「상업과 화폐」, 『한국사』14, 국사편찬위원회, 2003, 454-456쪽.

57) 『高麗史』 권69 志23 禮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閤門引宋綱首等 就聞辭位 立定. 閤門奏聞辭云 大宋都綱某等, 祇候朝賀 訖 引就拜位 跪進物狀 閤門接上 俛伏興 舍人喝 再拜 行頭奏聖躬萬福 奏山呼再拜 行頭進步 退復位 奏山呼再拜 次傳宣 賜坐看樂 兼賜所司酒食訖 奏山呼再拜 卷班西出 就幕次 次引東西蕃子 次引耽羅人 朝賀及傳宣禮 並與宋綱首同”

58) 『高麗史』 권6 世家6 靖宗 원년. “庚子 設八關會 御威鳳樓 賜百官酺 夕幸法王寺 翼日大會 又賜酺觀樂. 東西二京 東北兩路兵馬使 四都護 八牧 各上表陳賀 宋商客 東西蕃 耽羅國 亦獻方物 賜坐觀禮 後以爲常”

59) 『高麗史』 권6 世家6 靖宗 6년. “十一月 丙寅 大食國客商保那盖等來 獻水銀 龍齒 占城香 沒藥 大蘇木等物 命有司 館待優厚 及還 厚賜金帛”

고려의 국제무역관계는 상인을 중심으로 한 민간 무역이 성행하였는데 주로 송상들과의 교역이 주를 이루었고, 탐라·여진·일본 상인과의 교역도 이루어졌다. 상인들은 고려의 왕실이나 관청, 관료들을 상대로 방물과 진귀한 물품을 바치고 임금의 하사품을 받아가는 進獻무역이 주를 이루었다.⁶⁰⁾

A-④) (1036년) 11월 기축일에 팔관회를 열었다. 송나라 상인들과 동여진 및 탐라에서 각각 지방의 토산물을 바쳤다.⁶¹⁾

A-⑤) (1073년) 11월 신해일에 팔관회를 열고 왕이 신봉루에 나가서 풍악을 구경하였다. 이튿날 대회에서는 송, 후수, 탐라, 일본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제각기 예물과 명마를 바쳤다.⁶²⁾

A-⑥) (1100년) 11월 팔관회를 열고 왕이 법왕사로 행차하였다. 무인일에 송나라 상인과 탐라, 여진에서 토산물을 바쳤다.⁶³⁾

A-⑦) (1101년) 11월 팔관회를 열고 왕이 법왕사로 행차하였다. 송나라 상인과 탐라 및 동북변 추장들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⁶⁴⁾

A-⑧) (1123년) 11월 팔관회를 열고 왕이 정전에 나가서 축하를 받은 후 법왕사로 갔다. 동여진 추장 실현이 말을 바쳤다.⁶⁵⁾

A-⑨) (1153년) 11월 기해일에 팔관회를 열고 왕이 법왕사에 갔다. 경자일(大會日)에 탐라현 徒上 仁勇, 副尉 中連, 珍直 등 12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⁶⁶⁾

위 기록들에서 팔관회의 외국인 조하의식의 주요 대상국은 주로 송과 여진·탐라였으며 일본과도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조하의식은 팔관회가 대외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녔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고려는 이 의식을

60) 전영준, 앞의 글, 2010, 234쪽.

61) 『高麗史』 권6 世家6 靖宗 2년. “十一月 己丑 設八關會 宋商及東女眞耽羅 各獻方物”

62) 『高麗史』 권9 世家9 文宗 27년. “十一月 辛亥 設八關會 御神鳳樓 觀樂. 翼日大會 大宋黑水耽羅日本等 諸國人 各獻禮物名馬”

63) 『高麗史』 권11 世家11 肅宗 5년. “丙子 設八關會 幸法王寺 戊寅 宋商毛羅女眞等來 獻土物”

64) 『高麗史』 권11 世家11 肅宗 6년. “辛未 設八關會 幸法王寺 宋商耽羅東北蕃酋長等來 獻土物”

65) 『高麗史』 권11 世家11 仁宗 元年. “十一月 丁卯 設八關會 王御帳殿 受賀 幸法王寺. 東女眞酋長 實現來獻馬”

66) 『高麗史』 권18 世家18 毅宗 7년. “十一月 己亥 設八關會 幸法王寺; 庚子 耽羅縣徒上 仁勇副尉 中連珍直等 十二人來獻方物”

통하여 국제관계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여 고려의 위상을 세우고자 하였다. 즉 팔관회에 조회하는 외국인은 그들이 속한 민족이나 국가가 고려의 신하로서 복종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고려 황제의 德化를 받는 조공국의 사자로 예우되었으며, 고려는 이를 기반으로 문화교류의 영역을 확대해 갔다는 점에서 고려가 추구했던 국제문화 지향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⁶⁷⁾ 무인집권기와 江都期에도 무역을 겸한 외국인의 팔관회 조하의식은 미약하나마 계속 설행되었다.⁶⁸⁾ 하지만 12세기 후반 元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팔관회에서의 외국인 조하의식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2. 팔관보의 운영과 폐단

팔관회의 규모와 의식이 성대해지면서 문종대 국가의 稅制정비와 더불어 관련 기구의 정비와 함께 팔관회의 행사진행과 경비마련을 위한 八關寶⁶⁹⁾가 서경과 개경에 각각 설치되었다. 사료에서 寶에 관한 정의를 보면 ‘寶란 방언으로 시납된 전곡을 바탕으로 그 본전은 보존하고 이식을 취해 영원히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⁷⁰⁾ 즉 寶는 일정한 자금을 대여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불사나 공공사업 등을 행하는 식리기관으로 원래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寺院의 寺院寶를 활용한 식리활동이 성행하였는데 사원은 국가가 지급했던 寺院田이나, 왕실·귀족·일반민이 施納하는 토지와 전곡 등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사원의 식리활동은 寶·長生庫 등의 기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특히 寶가 중요한 식리 기구였다.⁷¹⁾ 국가도 재원의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명목의 寶를 운영하였는데 국가

67) 전영준,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와 재현양상」, 『역사와교육』14, 역사와교육학회, 2012, 27-29쪽.

68) 이진한, 「高麗時代 松商 貿易의 再照明」, 『역사교육』104, 역사교육연구회, 2007.

69)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八關寶. “文宗定 使一人四品以上 副使二人五品以上 判官四人甲科權務 吏屬記事二人 記官一人 筭士一人”

70) 『高麗史節要』 권1 太祖神聖大王 庚寅 30년. “寶者方言也 以錢穀施納 存本取息 利於久遠 故謂之寶”; 『高麗史』 권79 志33 食貨2 借貸 恭讓王 元年 十二月. “寶者方言 以錢穀施納 存本取息 利於久遠 故謂之寶”

71) 김동철, 「상업과 화폐」, 『한국사』14, 국사편찬위원회, 2003, 470쪽.

에서 운영했던 寶에는 官學寶·學寶·濟危寶·八關寶 등이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던 都監에서도 寶를 운영하였다.

고려시대 寶의 설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930년(태조 13)에 보인다. 태조가 서경 교육기관의 재정마련을 위해 ‘學寶’를 설치했다는 기사로 寶의 기본적인 식리방법을 알려준다.

B-① 겨울 12월에 西京에 행차하여 학교를 처음 설치했다. 이전에는 서경에 학교가 없었는데, 왕이 秀才 廷鶚에게 명하여 書學博士가 되어 머물게 하고 따로 學院을 창건하여 6部の 생도를 모아 가르치게 하였다. … 또 곡식 백 석을 내려 學寶로 하게 하였다. 寶란 것은 방언이다. 돈과 곡식을 기부하여 그 본전은 남겨두고 이자를 취하여 영구히 이용하는 까닭에 寶라고 이른 것이다.⁷²⁾

명종시기 서경의 재정에 관한 기록을 보면, 食祿으로 전해진 총액수 26,272石 중에 燃燈·八關·齋祭·客舍 등의 연간 용도로 4,321石을 책정했다는 내용이 있는데,⁷³⁾ 이 부분은 서경 관아에서 연간 집행되는 예산 가운데 가장 큰 액수를 차지하는 항목이다. 개경의 팔관회는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행사였으므로 규모면에서 서경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소요 비용 또한 서경보다 많았을 것이다. 일례로 외국인 조하의식만 보더라도 바쳐진 공물에 대하여 두 배 정도 되는 액수를 회사하는 것이 상례였고, 관료들에게도 하사품을 내려주었기 때문이다.⁷⁴⁾

해마다 팔관회를 성대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와 인력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마련이 중요했다. 이에 고정기금을 만들어 식리 행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寶’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八關寶에 관한 내용은 문종대 국가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제사도감각색에 처음 보인다. 팔관보의 설치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문종 때 諸司都監各色에 소속관원을 규정한 기록이 있는데⁷⁵⁾ 4품 이상의 使 1인과 5품 이상의 副使 2

72) 『高麗史節要』 권1 太祖神聖大王 庚寅 30년. “冬十二月 幸西京 創置學校 先是西京未有學 王命秀才廷鶚 留爲書學博士 別創學院 聚六部生徒 教授 … 又賜穀百碩爲學寶. 寶者方言也 以錢穀施納 存本取息 利於久遠 故謂之寶”

73) 『高麗史』 권80 志34 食貨3 祿俸 西京官祿.

74) 『高麗圖經』 권6 宮殿2 長齡殿. “賈人之至境 遣官迎勞 舍館定 然後於長齡受其獻 計所直 以物數倍償之”

인, 甲科權務로 判官 4인, 吏屬으로는 記事 2인, 記官 2인, 算士 1인을 두었다. 1076년(문종 30)에 정해진 녹봉을 보면 팔관보사는 60석, 팔관보부사는 40석, 팔관보판관은 13석 5두가 지급되었다.⁷⁶⁾ 팔관보에 소속된 관리들은 모두 임시 직인 권무직으로 녹봉은 관품에 비해 낮게 설정되었지만, 팔관보사가 권무관록 중 가장 많은 60석을 받고 있는 것은 권무관 가운데 중요한 자리였음을 알려준다. 또한 문무관록을 받는 정직 가운데 60석을 받는 관원은 종5품직에 해당하는데 4품 이상의 권무직이었던 팔관보사의 위상은 이에 준하였을 것이다. 팔관보 역시 중요시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⁷⁾ 그런데 서경의 팔관보는 1136년(인종 14) ‘묘청의 난’ 이후 팔관회가 중지됨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서경의 관제를 축소, 재정비하면서 1138년(인종 16)에 팔관도감으로 복구되어 부사 1인, 판관 2인을 두었으며, 1178년(명종 8)에는 禮儀司, 정설원과 함께 儀曹에 귀속시켰다.⁷⁸⁾

팔관보의 설치에 고려 정부가 팔관회 설행을 위한 경제기반의 마련을 의미하며, 팔관회 행사 진행의 중심적인 기구로 기능하였다. 아울러 팔관보를 관리하는 관원이 정해져 있음은 이를 명확하게 운영하고자 하였던 의도로 파악된다. 하지만 차츰 원래의 공공적 성격에서 벗어나 고율의 이자수취 기관으로 운영되었다.

B-②) 예종 3년 2월에 內庄宅 및 宮院의 여러 寶의 미곡을 빌렸다가 아직 갚지 못한 자는 을미년(1103년)분까지 면제해 주었다.⁷⁹⁾

위의 사료는 1108년(예종 3)의 기록으로 당시에 미곡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 것으로 寶의 자원운용과 관련된 폐단은 고려전기에도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후기 국가재정의 악화와 더불어 팔관회의 과도한 지출에 따른 비용 마련을 위해 寶는 원래 의미와는 달

75)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諸司都監各色 八關寶. “文宗定 使一人四品以上 副使二人五品以上 判官四人甲科權務 吏屬記事二人 記官一人 算士一人”

76) 『高麗史』 권80 志34 食貨3 祿俸 權務官祿. “文宗三十年定 六十石 八關寶… 四十石 八關寶 副使 … 十三石五斗 八關寶判官 …”

77) 안지원, 앞의 책, 2005, 201쪽.

78) 『高麗史』 권80 志31 百官2 外職 西京留守官.

79) 『高麗史』 권80 志34 食貨3 賑恤 恩免之制. “睿宗 三年 二月 … 內莊宅及宮院諸寶[寶者方言以錢穀施納 存本取息 利於久遠 故謂之寶] 穀米請貸 未還者 限乙未年”

리 고리대로 변질되어 경제적 부작용을 가져 오기도 했다. 寶의 이자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食貨志』의 借貸관련 기사를 참조할 수 있을 듯하다.

차대관계의 이자율이 정해진 것은 980년(경종 5)으로公私의 차대에 쌀 15두에 5두, 배 15척에 5척으로 1/3의 利息을 정하였다.⁸⁰⁾ 그 후 982년(성종 원년)에 ‘子母相侷’⁸¹⁾와 1074년(문종 원년)에 ‘子母停息’⁸²⁾이라 하여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자를 원금보다 많이 받을 수 없게 개정되었지만 이자율이 워낙 고평이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고려 후기 권력층의 토지탈점과 농장 확대, 別貢과 科斂으로 인한 백성의 流亡 등은 국가의 재정 감소를 악화시켰고 원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가의 재정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각 사원과 관청들은 토지와 노비를 확보하여 자신들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고,公私를 불문하고 불법적으로 많은 이식을 취하는 고리대가 성행하여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C-①) (1308년) 충렬왕 34년 11월에 충선왕이 하교하였다. “첫째 시장의 상인들은 이곳에 있고 저곳에 없는 물건들을 서로 매매하여 살아간다. 그런데 지난날 迎送·國贖·宴禮 등 여러 기관의 관원들이 빈 문서만을 주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져다 쓰고는 그 값을 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공공연히 빼앗기까지 하니 원망하는 소리가 적지 않다. 마땅히 각 관사에 명하여 문계들을 서로 조사하여 물품의 수량대로 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금후로는 모두 그 값을 주고 사게 하여 소동을 일으키지 말게 할 것이다. 둘째 지방에서 백성과 향리들이 이유 없이 科斂이 많고 잦아서 아들과 딸들을 팔아서 그 대가로 물품을 꾸어다가 관청에 바치고는 여러 해가 지나도록 갚지 못하니 실로 가엾은 일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관청에서 빨리 그 값을 돌려주어 아들과 딸들을 그 부모에게 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⁸³⁾

80) 『高麗史』 권79 志33 食貨2 借貸. “凡公私借貸 以米十五斗 取息五斗 布十五匹取息五尺 以爲恒式”

81) 『高麗史』 권79 志33 食貨2 借貸. “成宗元年十月制 令民間貸債出息者 子母相侷 更勿取息 …”

82) 『高麗史』 권79 志33 食貨2 借貸. “文宗元年 立子母停息之法 貸一石者 秋納一石五斗 二年 一石十斗 三年 二石 四年 停息 五年 三石 六年 後停息”

83) 『高麗史』 권79 志33 食貨2 借貸. “忠烈王三十四年 十一月 忠宣王下教 一 市肆商賈 質遷有無資生 在前 迎送國贖宴禮 諸色官 虛給文契 取用百物 不還其直 甚者 公然攬奪 怨讟不少 宜令各司 檢考文契 如數歸還 今後 盡行雇買 不得騷擾. 一 外方民吏 無因 科斂煩重 至有轉賣男女貨物納官 積年未還 實可哀矜 宜速公還其直 付其父母”

C-②) (1352년) 공민왕 원년 2월에 왕이 유지를 내렸다. “공·사간의 이자는 그 했수가 아무리 오래 지났더라도 원금과 이자가 같아질 때 까지만 내도록 한다. 사원의 상주들이 변돈으로 이자를 받는 것이 일정하지 않아 어떤 자는 二分(1/20)을 초과하기도 하니 해당 관청에서는 적당한 규정을 정해 몇대로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라. 빚 대신에 빈민으로부터 자녀를 받았을 경우 3년이 지나도 놓아 주지 않는 자는 감찰사와 안렴사가 엄격히 죄를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⁸⁴⁾

C-③) (1389년) 공양왕 원년 12월에 대사헌 조준 등이 글을 올렸다. “모든 공, 사의 이자는 원금과 이자가 같을 때까지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자를 놓는 자들이 오직 이익 챙기기에만 몰두해 원금의 10배나 되도록 이자를 받으니 꾸어 쓴 자들은 처자를 팔고도 다 갚지 못하는 지경이라 나라에서는 이미 금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供辦都監의 寶米는 그 이자가 끝이 없어 심지어는 꾸어 쓴 자들로 하여금 집과 직업을 다 잃게 만드니 이는 국가에서 백성들을 돌보는 뜻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이자를 원금액까지로 제한하고 그 이상 더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⁸⁵⁾

위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 후기로 갈수록 寶는 원래의 공공적 목적을 상실하고 이를 이용한 고리대 활동이 성행하였다. B-①의 사료에서는 지방의 공납이 제대로 되지 않아 迎送·國贖·宴禮 등 국가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담당기관은 시장에서 구매했으며 그 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빈번한 科斂으로 인해 자식을 팔아 공물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대책이 계속 제시되었지만 실상 효과는 미비하였다. 점차 식리는 더욱 가혹해져 국가의 식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상대로 허위로 文契를 조작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값을 치루지 않거나, 원금의 10배 이상의 이자를 붙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또한 돈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는 자식을 대신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사료 B-②는 寺院의 고리대에 관한 내용으로 빚

84) 『高麗史』 권79 志33 食貨2 借貸. “恭愍王元年 二月 宥旨 公私息錢 雖積年月 止還一本一利 其寺院 常住息錢 取利不等 或過二分 有司量宜定法 毋使任意取息 貧民鬻子女 如過三年不放者 監察司·按廉使 痛加理罪”

85) 『高麗史』 권79 志33 食貨2 借貸. “恭讓王元年 十二月 大司憲趙浚等上疏 凡公私滋息 一本一利耳 比來 貨殖之徒 惟利是視 一本之利 或至于十倍 假貸之徒 鬻妻賣子 終不能償 故國家 已有禁令 今供辦都監寶米 滋息無窮 至使貸者 喪家失業 非國家恤民之意也 願自今 一本一利 毋得剩取”

을 갚지 못해 팔았던 자녀들을 3년이 넘도록 돌려보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사원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사원은 寺院寶를 운영하여 식리행위를 하였는데 왕실 및 귀족들의 비호아래 국가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높은 이율을 적용시켜 경제적 폐단을 가져왔으며 양민들을 착취하여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寶를 포함하여 存本取息의 형태로 운영되는 재단의 고리대 폐단은 고려말기에 더욱 심화되었다. 사료 B-③은 공민왕 때 설치한 公辦都監寶의 폐단에 관한 내용으로 필요에 따라 설치되었던 각종도감에서도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寶를 운용했으며 이는 당시 국가기관도 일정부분 백성들을 상대로 한 고리대를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팔관보의 운영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팔관회는 10월과 11월 두 번 설행되었고 국가의례로는 가장 규모가 컸기 때문에 팔관회 준비를 위한 경비 마련은 백성들에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Ⅲ. 팔관회의 위상 변화와 문인층의 인식

1. 팔관회의 경제적 피해와 위상 변화

고려후기는 무인정권의 성립과 중앙통제력 약화에 따른 신분질서의 문란, 그리고 각 지방에서는 민란이 일어나는 정치·사회적 혼란기였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寺院과 문벌귀족들의 토지침탈과 농장소유의 확대, 외관들의 가렴주구, 가혹한 力役수취, 이에 따른 백성들의 이탈로 인한 流亡民 발생 등은 민란의 배경이 되어 12세기 중반부터 전국 각지에서 농민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亂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더불어 몽고와의 항쟁, 원 간섭기를 거치며 사회경제적 모순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고려는 지방의 주·부·군·현을 대상으로 공물을 부과하여 수취하였는데 貢賦는 지방관청이 중앙정부에 바치는 현물이지만 그 상당부분은 군현의 民을 사역시켜 조달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관청의 관계에서는 현물의 수취이지만 군현과 민호의 관계에서는 貢役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12세기 이후 所제도가 해체되면서 所에서 생산되던 물품은 일반 군현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⁸⁶⁾ 또한 개경은 국왕 이하 문무백관이 거주하며, 종묘·궁궐·관사 등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국가 행사에 따른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서 공역도 타지방에 비해 빈번하였다. 그 때마다 먼 곳의 주민을 징발하기 보다는 개경에서 가까운 경기·양광·교주도의 주민들을 징발하여 사역시켰으며 연등과 팔관회에도 徭役이 동원되었다.⁸⁷⁾

팔관회는 양일간 진행되는 행사기간 동안 갖가지 화려한 연회가 베풀어지는 국가의례였던 만큼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소요되는 경비와 동원되는 인원이 막대하였다. 따라서 팔관보의 운영과 경비조달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수탈에 따른 백성들의 공물납부와 力役부담이 가중되는 경제적 피해도 동시에 나타났다. 그로 인해 축제기간에도 즐기지 못하고 불만과 고통으로 허덕이는 사람들

86) 이정희, 「경제구조의 변화」, 『한국사』19, 국사편찬위원회, 2003, 298-299쪽.

87) 이정희, 「세역제도와 조운」, 『한국사』14, 국사편찬위원회, 2003, 380-382쪽.

이 생겨났다. 팔관회 경비와 관련한 폐단은 고려전기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성종대의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D-①)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八關을 베푸는데,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히 번다하니, 원컨대 이를 더 덜어서 백성의 힘을 퍼주소서. 또 갖가지의 偶人을 만드는데 工費가 매우 많이 들고 한 번 바치고 난 후에는 바로 부수어 버리니, 이 또한 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⁸⁸⁾

라고 그 폐단을 지적한 바 있다.

팔관회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거나 왕권이 약화되었을 때에 오히려 더 성대하게 열고자했기 때문에 팔관회 경비 및 의식의 진행과정과 관련한 문제들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D-②) (명종 9년) 최충렬이 또 건의하기를 “팔관회 때에 백관들의 과상(果床)과 중금군(中禁軍)의 옷차림이 지나치게 사치하여 제도에 배반되니 금지하기를 바랍니다”고 하니 왕이 그 의견을 접수하였다.⁸⁹⁾

D-③) (명종 11년) 옛 제도에 燃燈회, 八關회에는 반드시 대신을 서경에 파견하여 왕을 대행하여 齋祭를 거행하였다. 그런데 갑오년 의변부터 서경에 특사 파견을 정지하는 조서를 내리고 그 뒤로는 3품관을 보냈다. 최충렬이 재상으로 갔을 때 얻는 이익이 탐나서 왕에게 건의하기를 “선왕께서 서경에 재상을 보낸 것은 대개 익경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니 옛 제도를 따르도록 하소서.”라고 하였다. 왕이 그의 마음속을 짐작하고 최충렬을 서경으로 보내 팔관회를 행하게 하였다. 과연 돌아올 때에 뇌물을 많이 받아 그의 뇌물 짐이 30여 차에 이르렀다.⁹⁰⁾

D-④) (명종 19년) “근래에 팔관회에 쓸 약을 달이기 위해 의관에게 명하여 해마다 개경 근처에 사는 농민들의 암소를 가져다가 젖을 짜서 끓여 연유를 만들어 쓰는바 이로 인하여 암소와 송아지가 다 상합니다. 그 약은 원래 위급

88) 『高麗史』 권93 列傳6 崔承老. “我國 春設燃燈 冬開八關 廣徵人衆 勞役甚煩 願加減省 以紓民力 又造種種偶人 工費甚多 一進之後 便加毀破 亦甚無謂也”

89) 『高麗史』 권100 列傳13 崔忠烈. “忠烈又建議 八關會 百官果床 與中禁軍衣飾 華侈無制 請禁之”

90) 『高麗史』 권100 列傳13 崔忠烈. “舊制 燃燈八關 必遣宰相至西京 攝行齋祭 自甲午之變 西京有 事詔停遣使 後只遣三品官 忠烈利其贈遺 奏曰 ‘先王遣宰相爲使 蓋重翼京也 乞依舊制’ 王揣知其意 遣忠烈如西京 行八關會 及還 多受賄賂 輜重至三十餘兩”

할 때 쓰이는 약도 아니며 밭같이 하는 소가 줄어들니 이것을 폐지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 건의를 좇았으므로 백성들이 대단히 기뻐하였다.⁹¹⁾

D-⑤) 겨울 10월 안동·경주·진협주·상주·영암·나주·전주·양광주·청주·충주 등 10개 지역에 사자를 보내 각 지방의 토산물공납을 독촉하였다. 또한 군사들 중에서 동복을 준비하기 위해 허가를 받고 고향으로 가서 오랫동안 올라오지 않는 자들을 서울로 올라오도록 독촉하게 하였다.⁹²⁾

위의 기록들은 무인 집권기였던 명종과 고종 때의 사료로 팔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제적 폐단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사료 D-②는 팔관회의 상차림과 관리의 의복이 규정보다도 화려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D-④의 사료는 팔관회 준비에 특히 개경 근처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D-③은 당시 재상이었던 최충렬을 서경 팔관회에 파견했던 기록으로 서경 팔관회에 관리가 파견되면 관례상 서경의 지방관은 따로 선물을 마련해야 했다. 때문에 백성들은 팔관회 경비 마련부터 재상에게 건네 줄 선물까지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사료 D-⑤는 1217년(고종 4)의 기록으로 10월은 서경에서 팔관회를 치루는 달이며 11월 개경의 팔관회 개최를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의 토산물 공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준비에 차질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군사들이 개인적으로 군복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간 후 상경하지 않아 행사를 치루기 위해 올라오도록 독촉한 것으로 보서는 당시 국가의 재정상황이 군사들의 군복도 마련해주지 못할 만큼 열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팔관회 준비 기간인 9월이나 10월에 지방의 공납과 관련한 폐단은 이후에도 계속 보인다. 江都政府 시기였던 1256년(고종 43)의 기록을 보면, ‘연등회를 열 때 몽골의 침입으로 각 도에 宣旨使를 파견하지 못하자 경비 마련을 위해 宣旨使用別監을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백성들에게서 많은 재물을 긁어모아 국왕의 은총을 사려했다. 이에 백성들은 차라리 몽골군이 오는 것을 더 반겼다.’⁹³⁾는 사료에서 보이듯 백성들은 몽골군의

91) 『高麗史』 권99 列傳12 李純佑. “近來因八關煎藥 命醫官 歲取四畿民乳牛 絞取乳汁 煎而成酥 牴犢俱傷 其藥非備急 且損耕牛 請罷之. 制從之 民多感悅”

92) 『高麗史』 권22 世家22 高宗 4년. “冬十月 遣使於安東·慶州·晉陝州·尙州·靈岩·羅州·全州·楊廣州·淸州·忠州等 十道 督諸州土貢 又軍士有因取冬衣 請告歸鄉 久不番上者 督令赴京”

침략과 국가 수탈이라는 이중적인 착취에 시달려야 했다. 전쟁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은 팔관회의 의식이나 규모면에서 개경에서와 같이 화려하게 시행되지는 않았다.

D-⑥) (고종 6년) 팔관회 때 왕에게 賀表를 보내지 않은 자가 있어서 이규보가 이를 규탄하려 하였는데 금의가 굳이 말려서 중지하였다. 최충헌이 이 소식을 듣고 이규보를 탄핵하여 桂陽副使로 좌천시켰다.⁹⁴⁾

D-⑦) 팔관회를 베풀고 법왕사에 행차하였다. 그때 병란으로 인하여 여러 도에서 표문을 올린 곳이 南京·廣州·樹州뿐이었다.⁹⁵⁾

위의 기록들은 팔관회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D-에서 당시 諫官이었던 이규보는 하표를 올리지 않은 지방관을 규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천당한다. 팔관회에 하표를 올리지 않는 지방관이 있다는 것은 하표와 함께 올라오는 공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D-⑦에서도 하표를 보낸 지역이 세 군데 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는 몽골과의 전쟁 와중에 하표와 함께 올라오는 팔관회를 치루기 위한 지방의 공물 수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江都政府는 몽골 침략에 따른 강화천도의 상황에서 국가 위기의식을 느끼며 약해진 왕권을 회복하려 하였고, 집권 무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자 백성들의 고통을 도외시하고 팔관회 및 국가행사의 강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D-⑧) 김준은 4품 이상에게 명하여 차등 있게 銀을 바치게 하여 나라의 선물에 충당 하였으며 또 관리를 파견하여 부자들에게서 금과 은을 구입하였는바 그 법이 가혹하고 준엄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았다. 舊制에 팔관회를 여는 날에는 堂後 門下 두 사람이 성대하게 연회를 차리는 관습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병란으로 인하여 이미 폐지된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김준은 팔관회

93)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3년 二月 丙子. “燃燈 王如奉恩寺. 是月 以蒙兵 停發六道宣旨 使用別監 時奉使者 剝民橫斂 以固恩寵 民甚苦之 反喜蒙兵之至”

94) 『高麗史』 권102 列傳15 李奎報. “八關會有關賀表者 奎報欲彈 琴儀固止. 忠獻聞而劾之 貶奎報爲桂陽副使”

95) 『高麗史節要』 권17 高宗安孝大王 癸丑 40年. “設八關會 幸法王寺 時因兵亂 諸道上表者 只南京廣州樹州而已”

를 즐기는데 연회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광정연례도감을 두고 각 주군에 공문을 보내서 연회에 필요한 물자를 바치게 하였던 바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했으므로 그 후에는 중지했다.⁹⁶⁾

팔관회를 개최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였는데 그 결과 관리들이 부담해야 할 연회비용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는 폐해를 낳았다. 당시 국가의례를 치루기 위한 경비 마련 과정에서 생겨나는 경제적 폐단과 이에 따른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 간섭기 이후 고려는 元의 제후국으로 위치가 격하되면서 팔관회의 위상도 함께 낮아졌다.

D-⑨) 충렬왕 원년 11월 경신일에 본궐에 행차하여 팔관회를 열었다. 金鰲山額에 쓰인 ‘聖壽萬年’이란 4자를 ‘慶曆千秋’로 고치고, 그 중 ‘한 사람에게 경사가 나면 8방의 표문이 전정에 이르고 천하가 태평하다’는 등의 문자도 모두 고쳤다. ‘만세’를 부르던 것을 ‘천세’로 부르게 하고 임금의 행차 길에 ‘황토’를 퍼는 것을 금하였다.⁹⁷⁾

‘聖壽萬年’, ‘八表來庭’, ‘天下太平’, ‘呼萬歲’, 黃土 등은 중국의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들로, 위의 기록은 고려가 더 이상 ‘황제국’이 아닌 원의 여러 제후국들 중 하나로 편입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이 내재되어 있던 팔관회의 위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고려 말의 상황을 보면 팔관회의 핵심이라 할 조하의식이 행해지지 않았고 단순한 축제의 장으로 절기행사로 치러졌거나, 국왕이 없는 상황에서 사찰에서 불교행사로만 치러진 경우가 종종 보인다.

1010년(현종 1) 팔관회가 다시 시행된 이후 『고려사』에 나타난 팔관회의 정치 기사는 네 차례인데 모두 원 간섭기 이후에 해당된다.⁹⁸⁾ 1308년(충선왕 복

96) 『高麗史』 권130 列傳43 叛逆4 金俊. “俊令四品以上 出銀有差 以充國贖 又遣使 購富民金銀法苛峻 民多愁怨 舊制 八關閱樂日 堂後門下二人 盛設宴 近因兵荒 廢之已久 俊以閱樂不可無宴 乃置廣庭宴禮都監 移牒州郡 備供具 民甚苦之 後遂寢”

97) 『高麗史』 권69 志23 禮11 仲冬八關會儀. “忠烈王 元年 十一月 庚辰 幸本闕 設八關會 改金鰲山額 聖壽萬年四字 爲慶曆千秋 其一人有慶 八表來庭 天下太平等字 皆改之 呼萬歲 爲呼千歲 輦路禁鋪黃土”

98) 『高麗史』 권33 世家33 忠宣王 卽位年 11月 甲子. “命停八關會”

『高麗史』 권34 世家34 忠宣王 3年 11月 辛亥. “停八關會”

『高麗史』 권34 世家34 忠肅王 6年 11月 乙未. “停八關會”

위년)의 경우는 국사 태만으로⁹⁹⁾, 1311년(충선왕 3)의 경우는 왕이 원에 체류중이었다. 충선왕은 약 7년간의 재위기간(1298년, 1308~1313년) 동안 5년을 원에서 머물렀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팔관회 정지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충선왕이 국내에 없던 기간에는 사찰에서 불교와 관련된 절기행사로 치러졌을 가능성이 높다. 왕이 없는 상황에서 구정에서 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하의식과 太祖眞殿에 분향하는 의식은 없었고 백회가무만 행해졌을 것이다. 1319년(충숙왕 6)의 팔관회 정지 경우는 靖和公主의 국상이 이유였는데 이는 명종 대 국상이 있어도 기일을 엄수한 것과는 대조된다.

한편, 1376년(우왕 3)의 경우는 월식에 의한 것인데 문종 대에도 월식이 있었으나 13일로 초회를 당겨 개최하여 팔관회를 정지하지는 않았으며,¹⁰⁰⁾ 1357년(공민왕 6)에도 司天臺의 건의로 대회를 하루 앞당기거나, 1358년(공민왕 7)에는 13일이 동지여서 날짜를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정지하지는 않았다.¹⁰¹⁾ 따라서 위의 기록들은 원 간섭기 이후 팔관회가 명목상의 국가의례일 뿐 고려전기 사회통합과 다원적 천하관을 지향하며 이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던 본래의 성격에서 벗어나 있음을 느끼게 한다. 고려 말에 이르면 팔관회의 위상 하락과 이에 따른 성격변화를 알려주는 여러 상황들을 볼 수 있다.

E-①) 경자일에 팔관회를 열었다. 왕이 儀鳳樓로 나갔는데 上王과 丁午와 混丘는 의봉루 서쪽에서, 공주와 왕과 숙비는 의봉루 동쪽에서 음악을 감상하였다. 이튿날 대회일에 권신들을 수행한 중들이 광장에 들어왔다가 서로 싸움이 벌어졌는데 서로 돌을 던져서 누각 위(의봉루)까지 날아들었다. 그래서 왕의 시종들 중에는 紅鞮鉤(허리띠의 고리)에 명중되어 후 떨어지는 자도 있어 상왕이 호위병들을 시켜 두어 사람을 붙잡아서 모두 곤장을 쳤다.¹⁰²⁾

『高麗史』 권133 列傳46 辛禡 3年 11月 己丑. “以月食停八關會”

99) 『高麗史』 권89 列傳2 后妃2 淑昌院妃金氏條. “… 妃日夜百態妖媚 王惑之 不親聽政 遂命停八關會”

100) 『高麗史』 권69 志23 禮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文宗 五年 十一月 庚申 設八關會 月食在望 以十三日爲初會”

101) 『高麗史』 권69 志23 禮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恭愍王 六年 十一月 甲寅 八關大會 凡八關大會 以十一月 十五日 爲之 今以十四日 爲大會者 以司天臺言 子卯不樂故也 七年 十一月 己酉八關小會 庚戌大會 以十三日 冬至故也”

102) 『高麗史』 권34 世家34 忠肅王 元年. “庚子 設八關會 王御儀鳳樓 上王與丁午混丘在樓西 公主與王淑妃在樓東 觀樂 翌日大會權貴僕從 入廣庭 相鬪投石及於樓上 侍臣紅鞮鉤 或有中落者 上王命衛士 捕數人皆杖之”

E-②) 정묘일에 팔관회를 열었다. 우왕이 기녀들과 궁녀들을 데리고 憲府 북쪽 산에 올라서 구경하였다 그런데 이번 팔관회에서 巡軍과 近侍가 길을 다투다가 싸움이 되었는데 近侍 편에서 창에 찔리어 부상한 자가 많았다.¹⁰³⁾

E-①의 사료는 팔관회의 둘째 날인 大會日의 광경으로 의봉루에 올라 조하를 받고 있어야 될 국왕이 의봉루 동쪽에서 음악을 감상하고 있으며, 관리를 수행하던 종들이 팔관회가 열리는 광장에서 서로 돌을 던지며 싸우던 상황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팔관회 때 싸움이 일어났던 기사는 E-②의 사료를 포함하여 종종 보인다.¹⁰⁴⁾ 이는 팔관회가 더 이상 왕에 의해 주도되는 엄숙한 국가 의례가 아닌 소란스러운 행사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왕은 아예 궁궐을 벗어나 산에 올라 가무를 구경하고 있다. 이는 팔관회의 핵심적 의례라 할 수 있는 조하의식 절차가 행해지지 않았고, 국왕이 행사의 주체자가 아닌 구경꾼의 입장에서 참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임금과 신하가 힘께 즐겼던 가무백회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구경거리로 전락하였으며 팔관회는 명목상으론 국가의례일 뿐 소란스러운 단순 축제의 절기행사¹⁰⁵⁾로 변질되어 갔다.

E-③) 11월 갑진일에 팔관회를 베풀고 왕이 의봉루에 가서 반야도량을 베풀었다.¹⁰⁶⁾

위 사료는 1276년(충렬왕 6)에 팔관회를 설행하고 나서 불교행사인 반야도량을 행하였다는 내용인데, 반야도량은 질병을 물리치거나 비가 오기를 구하는 현세구복적인 성격으로 이때에 이르러서는 팔관회가 불교행사와 혼용되어 행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03) 『高麗史』 권136 列傳49 辛禡. “丁卯 設八關會 禡率妓及宮女登 憲府北山 觀之 是會 巡軍與近侍 爭路雜沓 近侍多爲槩所傷”

104) 『高麗史』 권102 列傳15 琴儀. “嘗於八關會 臺吏以事扼隊正喉辱之 軍將呼噪 亂擲瓦礫于御史臺 幕有飛石過宰相幕 …”; 『高麗史』 권105 列傳18 洪子藩. “嘗管別軍 行八關 都省庭壇祭 別軍攘奠物 省吏訶止之 永通縱別軍 亂擊省官 左司議申德隣 獻納朴晉祿·李燾 正言鄭釐·安勉 俱見傷 血濺屏褥 右司議卓光茂劾 永通喉別軍 凌轢諫官 是可忍 孰不可忍 …”; 『高麗史』 권131 列傳44 叛逆5 金鏞. “鏞爲巡軍萬戶 招集無賴隸 巡軍近千人 常以自隨 八關會 忽赤巡軍 分隊扈衛巡軍與忽赤爭路 梃擊忽赤將軍 忽赤訴于王 置不問”

105) 『高麗史』 권84 志38 刑法1 名例 禁刑 俗節. “元正 上元 寒食 上巳 端午 重九 冬至 八關 秋夕”

106) 『高麗史』 권28 世家28 忠烈王 2年. “十一月 甲辰 設八關會 幸儀鳳樓 行般若道場”

E-④) 지방에 번고가 많다는 것으로 八關會와 新年, 冬至에 하표를 올리는 것을 그만두게 하였다.¹⁰⁷⁾

E-⑤) 경인일에 八關과 冬至의 축하를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다.¹⁰⁸⁾

E-④는 1280년(충렬왕 6)의 사료이고, E-⑤는 1362년(공민왕 11)의 기록으로 모두 팔관회에 하표를 올리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팔관회에 俗節이었던 冬至나 新年 행사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E-⑥) 계묘일에 팔관회를 열고 또 각 기관에서 松京에 관리를 파견하여 팔관회를 행하였다.¹⁰⁹⁾

공양왕은 1392년(공양왕 2) 9월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였다가¹¹⁰⁾ 1392년(공양왕 3) 2월에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는데¹¹¹⁾ E-⑥의 사료는 한양으로 천도했던 해의 팔관회 설행기록으로, 왕은 팔관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각 기관의 관리를 팔관회에 파견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팔관회가 사찰에서 행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듯 고려후기의 팔관회는 사찰에서 불교행사로 또는 毬庭에서는 절기행사로 혼용되어 설행되었다.

2. 문인층의 팔관회 인식

고려후기 문인들의 팔관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각 시기에 대한 현실인식과 대응 방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절에서는 고려후기 문인층을 무인집권기 대몽항쟁기였던 江都政府 시기의 문인들과, 14세기 후반 공민왕의 反元政策을 기점으로 고려왕조를 유지하려 했던 문인들과 고려말 성균관을 중심으로 斥佛論을 주장하며 조선건국을 주도했던 문인들로 나뉘

107) 『高麗史』 권28 世家28 忠烈王 6年. “... 以外方多故 除八關·正·至賀表”

108) 『高麗史』 권40 世家40 恭愍王 11年 庚寅. “命停八關冬至賀”

109) 『高麗史』 권45 世家45 恭讓王 2년 11월 癸卯. “設八關會 又分遣各司 于松京 行八關會”

110) 『高麗史』 권45 世家45 恭讓王 2년 9월 丙午. “遷都于漢陽”

111) 『高麗史』 권45 世家45 恭讓王 3년 2월 丁卯. “至自南京 都人結綵棚以迎之”

살펴보겠다.

우선, 무인집권기와 대몽항쟁기를 겪은 대표적인 문인은 李奎報, 崔滋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무인집권시기에 몽골과의 전쟁을 통해 체득한 항몽의식으로 여전히 다원적 천하관의 관점에서 고려사회를 바라보고 있었다.¹¹²⁾ 이들은 치열하게 전개되는 대몽항쟁 속에서 몽골을 ‘달단의 완악한 무리(達旦之頑種)’¹¹³⁾ ‘짐승같은 달단(達旦禽獸)’¹¹⁴⁾ 등의 표현으로 경멸하였으며 대몽항전의 경험은 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끼쳤다.¹¹⁵⁾ 또한 국가적으로 혼란하고 어려웠던 전쟁 상황은 공동체 의식의 결집을 가져와 강화전도의 상황에서도 팔관회를 비롯한 국가의례를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제사로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F-①) (고종 21년) 재미일에 연등회를 열고 왕이 奉恩寺에 갔다. 이때에 전 參政 車僞의 집을 봉은사로 만들었으며 백성들의 가옥을 헐고 임금이 다니는 길을 넓혔다. 당시는 비록 도읍을 옮긴 초창 시기였으나 毬庭, 궁전, 사원 등 일체 시설을 다 松都에 있던 이름과 같이 하였고 팔관회, 연등회, 분향, 도량 등등을 다 종전의 방식대로 하였다.¹¹⁶⁾

F-②) 衣冠이 잘 되어서 새 서울이 옛 서울보다 낮고, 簫管이 울려 퍼지니 오늘 의 음악이 옛 음악과 다름이 없습니다.¹¹⁷⁾

F-③) 祖宗께서 행하시던 것을 따라 八關의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하여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니 기쁨이 천지에 가득하고 경사가 조야에 넘치나이다... 仲冬에 거룩한 예식을 크게 여니, 상서로운 징조가 마구 이르러 자라는 산을 이고 거북은 그림을 졌으며, 온갖 악기를 다 벌이니 용은 피리를 불고 범은 비파를 타나이다.¹¹⁸⁾

112) 노명호, 「고려시대 다원적 천하관과 해동천자」, 『한국사연구』105, 한국사연구회, 1999, 12-13쪽.

113)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권제25 雜著 丁酉年行 大藏刻板君臣祈告文. “... 甚矣達旦之爲患也 其殘忍凶暴之性 已不可勝言矣 至於癡暗昏昧也 又甚於禽獸 ...”

114) 李奎報, 『東國李相國全集』 권제25 雜著 辛卯 十二月日 君臣盟告文. “... 天降喪亂于國家 彼達旦之頑種 無故犯境 ...”

115) 채웅석, 「원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 『역사와현실』49, 한국역사연구회, 2003, 103-104쪽.

116)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21년 二月 癸未. “燃燈 王如奉恩寺 以故參政車僞家爲奉恩寺 撤民 家以 廣輦路 時雖遷都草創 然凡毬庭 宮殿 寺社號 皆擬松都 八關燃燈行香道場 一依舊”

117) 崔滋, 『補閑集』 卷下.

118)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권 제12 表 教坊八關賀表. “云云 率祖攸行 講八關之嘉會 與民同樂 均萬國之懽心 喜洽神祇 慶騰朝野 ... 爰屬仲冬 大開盛禮 休祥沓至 鼇戴山 而龜負圖 廣樂畢張 龍吹簾而虎鼓瑟”

사료 F-①은 강화천도 직후 어떤 국가의례보다도 먼저 팔관회를 복구했음을 알 수 있으며, F-②는 崔滋가 1241년(고종 28)에 개최된 팔관회 때 올린 팔관하표로 강화천도 시기에도 팔관회가 의례절차에 맞춰 설행되었음을 알려준다. F-③은 이규보가 올린 팔관하표이다. 용과 범의 가면을 이용하여 행하는 백희가 무의 한 장면으로 팔관회의 화려한 의식을 표현하였다. 팔관회의 기능 중 하나인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與民同樂’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팔관하표에서는 고려 국왕에 대해 ‘天子’와 ‘皇帝’, ‘陛下’라는 칭호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다원적 천하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문인들은 몽골의 침입에 의한 국가존립의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과거의 오랑캐라는 인식과, 현재 동아시아의 중심세력으로 떠오른 원의 존재를 동시에 받아들여야 하는 이중적인 모순에 처해 있었다. 이런 상황은 당시 문인들로 하여금 고려의 전통적인 國俗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왔고, 해결책으로 고려의 역사와 전통이 다른 어느 민족에도 뒤지지 않는 국가임을 강조하며 海東文化의 우월성과 역사적 전통에 강한 자부심을 나타내고자 하였다.¹¹⁹⁾ 이들에게 기존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국가를 유지하는 한 방편이었고 따라서 지속되는 전쟁과 그로 인한 국가재정의 압박 속에서도 태조의 유훈인 팔관회의 설행은 지속적으로 성대하게 치러져야 했다.

14세기 원 간섭기로 접어들면서 고려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원으로부터 전파된 문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고려의 왕은 어린 시절부터 원에서 자라 원의 공주와 혼인을 하였기 때문에 원의 문화가 더욱 익숙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원의 문화를 전파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元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는 원이 천하의 중심이라는 華夷論的 天下觀인 一元的 천하관으로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원에 의한 잦은 왕위 교체와 이에 따른 왕권약화는 팔관회 조하의식의 의미를 퇴보시켰다.

이와 더불어 원은 초기의 강화교섭에서 고려에 대해 世祖舊制를 인정하면서

119) 魚江石, 『高麗 後期 文人의 元 文化 受容과 意識 變化』, 『개신어문연구』20호, 개신어문학회, 2003, 359쪽.

‘不改土風’의 원칙을 바탕으로 고려의 전통적인 문화와 왕조체제를 인정하는 대신 冊封權을 행사하여 고려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행하였다. 元은 6事を 요구했는데 고려는 독자적 국가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영토와 주민 및 부세수취의 권한 등 통치권을 확보한 대신 지배층 자체의 人質, 호구조사 실시, 다른 지역 정복 시의 助軍 파견, 稅賦·食糧의 輸納, 達魯花赤의 駐在, 驛站 설치의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¹²⁰⁾ 이후 元의 요구에 따라 각종 別貢과 科斂 등의 수취가 증가하고 귀족들의 토지탈점과 농장 확대가 지속되어 백성들은 물론 지방의 향리들까지도 役을 피해 유망하거나 僧이 되어 寺院으로 도피하는 현상이 일어났다.¹²¹⁾ 이에 따른 하급승려의 증가는 국역부담자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국가의 賦稅制 운영을 전반적으로 동요시키는 것이었다.¹²²⁾ 따라서 이를 시정하려는 시도는 계속적으로 있었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고려 말까지도 계속되었다.

G-①) 兩倉의 녹전미와 각 관아의 공물이 근래 납부가 지연되어 비용이 모자라게 되니… 각 도의 存撫使·안렴사·수령 등의 관원들은 납부를 제 기한보다 늦어지게 한 자를 엄격히 조사해 추궁하라.¹²³⁾

위의 사료는 1339년(충숙왕 후 8) 5월에 감찰사에서 공포한 禁令으로 각 도의 관리들에게 기한 내에 공물의 납입을 지킬 것을 재촉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1343년(충혜왕 후 4) 7월에는 “각 도의 지난해 貢賦를 추가하여 징수하였더니 餘美縣의 아전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제 스스로 목을 찢러 죽은 자가 있었다.”¹²⁴⁾는 내용은 당시 극심하였던 貢賦에 대한 폐해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1288년(충렬왕 14) 10월에는 “賦稅가 납부되지

120) 『高麗史』 권25 世家25 元宗 3年. “十二月 乙卯日 … 凡遠邇諸新附之國 我祖宗有已定之規則 必 納質而籍民 編置郵而出師旅 轉輸糧餉 補助軍儲”; 여원관계사연구팀, 『譯註 元高麗紀事』, 선인, 2008, 121쪽. “凡遠邇諸新附之國 我祖宗有一定之規則 必納質而籍編民 置郵而出師旅 轉輸糧餉 補助軍儲”

121) 채웅석, 「12·13세기 향촌사회의 변동과 ‘민’의 대응」, 『역사와현실』3, 한국역사연구회, 1990, 71쪽.

122) 李炳熙, 「사원전」, 『한국사』14, 국사편찬위원회, 2003, 265쪽.

123) 『高麗史』 권78 志32 食貨 田制 貢賦. “後八年 五月 監察司榜示禁令 兩倉祿轉 各司貢物 近因 輸納失期 用度不足 … 其各道存撫·按廉·守令等官 輸納後期者 嚴加糾劾”

124) 『高麗史』 권78 志32 食貨 田制 貢賦. “忠惠王後 四年 七月 追徵各道往年貢賦 餘美縣吏 不堪其苦 遂自刎”

않아 백관의 녹봉도 주지 못하게 되자 품계에 따라 工, 商, 賤人,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등급을 매겨서 科斂하였다.”¹²⁵⁾는 기록에서도 당시 국가의 재정상황을 알 수 있는데 국가는 필요에 따라 科斂으로 경비를 충당하였다.¹²⁶⁾ 科斂은 원 간섭기에 원의 요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임시 부과세로 관료들이 주된 부과대상이었지만 그 부담은 다시 일반 백성에게 전가되어 또 다른 폐해로 작용하였으며 공민왕대 이후에는 국가의 부족한 공납물을 채우는데 부과되었다.

G-②) (1362년) 공민왕 11년 9월. 조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자 백성들에게서 추가로 징수하였는데 大戶는 쌀과 콩 각 1석, 中戶는 쌀과 콩 각 10두, 小戶는 쌀과 콩 각 5두씩이었다. 그것을 無端米라고 불렀으며, 백성들이 심히 고통스러워했다.¹²⁷⁾

G-③) (1388년) 신우 14년 3월에 九妃와 三翁主의 諸殿에 바치는 공물이 너무 많고 번다해 창고가 고갈되었다. 때문에 3년치 공물을 미리 징수하였는데도 오히려 부족하여 또 橫斂하니 백성들이 심히 고통스러워했다.¹²⁸⁾

이 외에도 1376년(우왕 2) 9월에도 군량이 부족하다 하여 品米를 차등 있게 징수하였는데 당시 함부로 벼슬을 주어서 工商賤隸도 모두 벼슬을 받아 品米를 내는 양이 많았다.¹²⁹⁾는 내용이 보이는데 모두 9월의 기록으로 가을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공물은 兩京의 팔관회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이었다. 그러나 貢賦의 폐단은 고려 말 고리대와 결합되면서 백성들의 流亡을 확산 시켰으며 이는 국가재정을 악화시켜 別貢과 科斂의 형태로 수취가 이루어졌고 그 폐해는 또다시 백성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고려 말까지 경제적 모순은 심화되어 갔다. 이와 더불어 사원의 농지확대와 농민에 대한 지배 강

125) 『高麗史』 권78 志32 食貨 田制 科斂. “十四年 十月 … 郡縣罹患 賦稅多欠 百官月俸 且未准給 … 於是 張榜 約日斂米 隨品有差 至於工商賤隸 科等收納”

126) 『高麗史』 권 79 志33 科斂. “凡國有大事 用度不敷 則臨時科斂 以支其費焉”

127) 『高麗史』 권 79 志33 科斂. “恭愍王十一年九月 以調度不給 增斂於民 大戶米豆各一石 中戶米豆 各十斗 小戶米豆各五斗. 名之曰無端米 民甚苦之”

128) 『高麗史』 권 78 志32 食貨1 貢賦. “辛禡十四年 三月 九妃三翁主諸殿 上供之物 浩繁 倉庫匱竭 預徵三年貢物 猶不足 又加橫斂 民甚苦之”

129) 『高麗史』 권 79 志33 科斂. “辛禡二年九月 以軍餉不足 收品米有差 三四品三石 五六品二石 其餘從品秩而降 時 官爵猥濫 工商賤隸 皆冒受 故品米之出 多額焉”

화는 사원경제의 팽창을 가져왔고 이는 척불론의 명분이 되어 고려 말 사원경제를 혁파하기 위한 대책들이 행해지게 된다.

國敎였던 불교는 고려사회의 중심축으로 국가의 유지 존속을 위해 많은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고려 말에 이르러 교리 자체의 발전이 아닌 사원경제의 비대화 형태로 이루어져 사회의 지도이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¹³⁰⁾ 빈번한 祈佛행사, 寺院田의 확대, 僧徒의 증가 등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며 사회경제모순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왕실을 중심으로 한 집권층과 깊은 관계를 갖고 권력의 한 축을 이루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¹³¹⁾ 더욱이 팔관회는 고대의 전통신앙을 계승한 국가적 행사였으나 불교가 습합된 형태의 의례였다. 고려 전 시기에 걸쳐 불교가 정치·사상·문화·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치며 고려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었던 만큼 팔관회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일정정도 불교와 관련지어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4세기 원의 주자학이 유입된 이후 주자학은 불교교단의 타락과 세속화 경향이 심해져 가는 상황에서 당시 문인들에게 기존의 고려사회를 혁신하여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사상으로, 또는 고려의 기존 질서를 부인하고 새로운 시대를 지향하는 지도 원리로 여겨졌다. 14세기 후반 문인들은 당시 개혁의 범위와 불교를 인식하는 태도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온건 개혁파로 기존의 정치체제를 바꾸기 보다는 당시 불교와 관련한 사회·경제적 폐단만을 제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며 고려왕조를 유지하려는 입장과 둘째, 전제개혁파 斥佛論을 제기하며 성리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자 했던 급진 개혁파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당시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개혁이념과 지도 원리로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각자가 가진 정치·경제적 기반에 따라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을 바라보는 현실인식이 달랐으며 그에 따른 개혁방법과 범위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온건개혁파는 李穡을 중심으로 한 문인관료들로 신진사대부 출신이지만 대

130) 이정주, 『性理學 受容期 佛教 批判과 政治·思想的 變容』,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68-69쪽.

131) 이봉춘, 「성리학의 전래와 수용」, 『한국사』21, 국사편찬위원회, 2003, 151쪽.

토지 소유자였고 왕실과 밀착되어 탄탄한 정치·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개혁에 있어서도 기존의 高麗적인 질서를 유지하려 하였다. 고려 말 전제개혁에 관한 사료를 보면,

H-①) 이 때 田制가 대단히 문란하였다. 우리 태조는 대사헌 조준과 함께 私田을 개혁하고자 도평의사사에서 田制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을 때 李穡은 옛법을 경솔히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동의하지 않았다.¹³²⁾

1389년 창왕이 즉위한 해에 趙浚은 전제개혁의 상소를 올렸고, 이에 대해 李穡은 풍속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완강히 거부하였다. 그리고 당시 사회·경제적 폐단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사찰과 승려들의 불법적인 행태와 관련하여 대응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드러낸다. 온건개혁파들은 태조가 불교에 의지해 왕조를 창업하였다고 보고 불교를 고려왕조를 정당화 시켜주는 지배이념으로,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준거로 불교의 현실적·종교적 기능을 인정하였다.¹³³⁾ 또한 유교와 불교가 추구하는 목표가 궁극적으로는 같다는 ‘儒佛同道論’을 주장하며 불교를 배척하지 않았다. 다만 寺院田을 비롯한 왕실의 잦은 불교행사와 그에 따른 경제적 폐단, 새로 창건된 절의 철폐, 役을 피해 僧이 되려는 사람들을 막고자 度牒制의 실시 등을 주장하면서¹³⁴⁾ 사원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田制개혁을 기본으로 하는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당시 사원경제의 폐단만을 시정하려는 입장으로 이는 불교를 기존의 지배질서를 유지하는 이념으로 가져가고자 했으며 당시 지배층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표현으로 고려왕조를 수호해야 하는 지배층으로서의 현실적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³⁵⁾ 따라서 기존에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던 불교의례

132) 『高麗史』 권115 列傳28 李穡. “時田制大壞 我太祖 與大司憲趙浚 欲革私田 都評議使司議田制 穡以爲不可輕改舊法 持其議不從”

133) 도현철, 「고려말기 사대부의 불교인식과 대응」, 『역사와 현실』20, 한국역사연구회, 1996, 176-178쪽.

134) 『高麗史』 권115 列傳 28李穡. “... 臣伏乞 明降條禁 已爲僧者 亦與度牒 而無度牒者 卽充軍伍 新創之寺 並令撤去 而不撤者 卽罪守令 庶使良民 不盡髡緇”; 이와 관련한 연구는 최진석, 「고려후기의 도첩제에 대하여」, 『경희사학』3, 경희사학회, 1972; 姜京南, 「度牒制考」, 『동국사학』 16, 동국대 불교대학, 1983; 전영준, 「여말선초 도첩제 운용과 승도의 성격」, 『백산학보』 70, 백산학회, 2004; 양혜원, 「고려후기~조선전기 면역승의 증가와 도첩제 시행의 성격」, 『한국사상사학』44, 한국사상사학회, 2013 등이 있다.

135) 도현철, 「14세기 전반 유교지식인의 현실인식」,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았다. 이색은 우왕과 창왕을 왕으로 세우는데도 기여를 하였으며¹³⁶⁾ 팔관회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팔관하표의 작성에도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팔관회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팔관하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국왕에 대한 칭송이 대부분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 궁핍으로 팔관회를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과 공물 납부를 떠안아야 했던 백성들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음의 사료에서 李穡이 팔관회 개최의 번잡함과 백성들의 고단함에 대한 그의 염려를 단편적으로나마 읽을 수 있다.

H-②) 양회 의식은 어찌 그리 번다하고, 선왕의 뜻이 매우 참다웠도다.¹³⁷⁾

H-③) 팔방서 바친 토산품은 산악보다 높고요...¹³⁸⁾

H-④) 예부터 금중엔 화려한 자리가 성대하건만 가난한 집에는 소찬도 어려움을 비로소 믿겠네.¹³⁹⁾

이처럼 팔관회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계속되었고 詩文 중간 중간에 보이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표현한 문장은 당시 고려사회의 모순과 이들의 팔관회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고려의 개혁을 원했던 급진적 성향의 문인들에게는 기존의 개혁정책에 한계를 느끼게 하였다.

14세기 말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反元親明정책을 추진했던 공민왕은 고려의 전통을 회복하려 하였지만 잦은 佛事를 일으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으며 辛旽의 등용은 문인들의 개혁에 대한 한계를 조장함과 동시에 불교에 대한 반감도 조장하였다. 이에 성리학을 근거로 불교를 비판·개혁하려는 시도는 1367년(공민왕 16) 성균관 重營 이후 성균관을 통해 결집되고 배출된 신진세력을 통해 나타났으며 이들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갔다.¹⁴⁰⁾ 이들은 기존의 지배

1994, 585쪽.

136) 『高麗史』 권115 列傳28 李穡. “十四年 … 穡亦欲立昌乃曰 ‘當立前王之子’ 遂立昌昌起”

137) 李穡, 『牧隱詩稿』 12권 詩 11일에 四首. “兩會儀何縟 先王意甚眞”

138) 李穡, 『牧隱詩稿』 5권 詩 八關. “八方壤奠高於嶽”

139) 李穡, 『牧隱詩稿』 20권 詩 小會日. “由來地禁華筵盛 始信家貧素食難”

140) 이정주, 앞의 글, 2007, 2쪽.

이념과 이와 결합된 지배층과 지배질서를 비판하며 당시 유교와 불교 등 혼용된 정치체제를 비판하고 성리학을 사회의 개혁이념으로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지배질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¹⁴¹⁾ 이에 불교를 인간의 도리와 윤리도덕을 저버리는 오랑캐의 종교라 이단시하며 斥佛論을 주장하면서 사원경제 해체의 이론적 근거로 내세웠으며 척불운동과 전제개혁은 공양왕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고려 말 국가가 토지제도의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원은 토지를 확대하는 주요 세력의 하나였다. 국왕이 주도해서 사원을 건립할 경우 收租地가 지급되었으며 그 외 施納과 개간·賜牌를 통해 토지 소유를 확대하였는데 그 규모는 10만결 이상으로 전 농토의 1/8 정도에 이르렀으며 더불어 免稅地도 증가하였다. 또한 토지를 매개로 농민에 대한 지배를 강화시켰다. 이는 곧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로 이어졌다.¹⁴²⁾ 당시 鄭道傳이 사원경제 폐단을 지적한 내용을 보면,

H-⑤) …오늘날 저들이 화려한 殿堂과 큰 집에 사치스런 옷과 좋은 음식으로 편안히 앉아서 향락하기를 王子를 받들고 같이 하고, 넓은 田園과 많은 노복을 두어 문서가 구름처럼 많아 공문서를 능가하고 … 가만히 앉아서 옷과 음식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좋은 佛事라고 거짓 칭탁하여 갖가지 공양에 … 비단을 찢어 佛典을 장엄하게 꾸미니, 대개 평민 열 집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온통 소비한다.¹⁴³⁾

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도망하여 중이 된 자가 10만 명이나 된다.’¹⁴⁴⁾고 하면서 당시 役을 피해 僧이 되는 것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鄭道傳을 비롯한 급진개혁파들은 우선적으로 전제개혁을 통해 私田에 대한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였다. 趙浚은 3차에 걸쳐 전제개혁에 대한 상소를 올리고 있는데¹⁴⁵⁾

141) 도현철, 앞의 글, 1996, 184-188쪽.

142) 李炳熙, 앞의 글, 2003, 261-263쪽.

143) 鄭道傳, 『三峰集』, 「佛氏雜辨」, 佛氏乞食之辨. “… 今也華堂重屋 豐衣厚食 安坐而享之如王者之奉 廣置田園臧獲 文簿雲委 過於公卷 奔走供給 … 不惟坐費衣食而已 假托好事 種種供養 … 壞裂綵帛 莊嚴幢幡 蓋平民十家之產”

144) 鄭道傳, 『三峰集』, 「朝鮮經國典」上, 賦展, 軍資. “… 去而爲浮圖者 不下十萬 …”

145) 1차 상소: 1388년(우왕 14) 7월, 2차 상소: 1389년(창왕 원년) 8월, 3차 상소: 1389년(공양왕 즉위) 12월에 제기되었다; 『高麗史』 권78 志32 食貨1 田制 祿科田 참조.

사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H-⑥ (1388) 우왕 14년 6월, 창왕이 하교하기를 … 그 料物庫에 속한 360개소의 莊과 處의 토지 가운데 선대에 寺院에 施納한 것은 모두 요물고로 반납하라.¹⁴⁶⁾

H-⑦ 1. 寺社田 : 태조 이래 5대 사찰과 10대 사찰 등의 國歌裨補所로서 개경에 있는 사찰에는 유지비용을 지급하고, 지방에 있는 사찰에는 柴地를 지급한다. 『道誥密記』에 기록된 사찰 외에 신라·백제·고구려 때 창건한 寺社 및 새로 조성한 寺社에는 지급하지 않는다.¹⁴⁷⁾

H-⑧ (1391년) 공양왕 3년 5월. 都評議使司에서 올려 科田의 지급에 관한 법의 제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니, 왕이 허락했다. … 지나간 공·사의 토지대장을 강제로 회수해 … 옛 제도를 적절히 가감하여 … 寺院田·軍田·匠田·雜色田을 책정하였다. … 어떤 사람도 寺院과 神社에 토지를 施納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죄로 다스린다. …公私의 천인·공장·상인·점쟁이·맹인·무당·창기·승려 등은 당자와 자손 모두에 토지를 주지 않는다.¹⁴⁸⁾

H-⑥은 1391년(공양왕 3)公私의 田籍을 모두 거두어 수조지를 재분급하는 과정에서 裨補寺院의 여부가 토지 지급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H-⑤와 ⑦은 사원에 토지 시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특히 원 간섭기 이후 사원에 토지 시납은 유행이 되다시피 하였었다.¹⁴⁹⁾ 이에 사원에 대한 토지 시납이 금지되어 사원경제의 중요 기반이 없어지게 되었고 승려 자신이나 자손이 토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도 1391년(공양왕 4) 사원에 노비를 시납하는 것을 금하여 인적 기반을 없애려 하였다.¹⁵⁰⁾ 따라서 당시 불교의례의 하나로, 양경에서 설행되었던 팔관회는 사원경제의 축소와 더불어 폐지되어야 할 대상이

146) 『高麗史』 권 78 志32 食貨1 田制 祿科田. “辛禡十四年六月 昌教曰 … 其料物庫屬 三百六十莊·處之田 先代施納寺院者 悉還其庫”

147) 『高麗史』 권 78 志32 食貨1 田制 祿科田. “一 寺社田. 祖聖以來 五大寺·十大寺等 國家裨補所 其在京城者 廩給 其在外方者 給柴地. 道誥密記外 其新羅·百濟·高勾麗所創寺社 及新造寺社 不給”

148) 『高麗史』 권 78 志32 食貨1 田制 祿科田. “三年五月 都評議使司上書, 請定給科田法 從之 … 拘收公私往年田籍 盡行檢覆 … 以定 … 寺院·軍·匠·雜色之田 … 凡人毋得施田於寺院神祠 違者理罪 … 公私賤口·工·商賣·卜·盲人·巫覡·倡妓·僧尼等人 身及子孫 不許受田”

149) 李炳熙, 앞의 글, 2003, 23-25쪽.

150) 『高麗史』 권 85 志39 刑法2 奴婢. “恭讓王 四年 人物推辨都監 定奴婢決訟法. 一 將自己奴婢 投贈權勢 施納佛宇神祠者 痛行禁理”

되었다.

한편, 공민왕대 흥건적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왕이 안동까지 피난을 갔던 상황과, 계속된 왜구의 침입으로 국토가 훼손되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설행된 팔관회에 대해 白文寶는

I-①) 임금에게 글을 올려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대대로 동방의 사직을 지키고 있어 문물 예악이 고대의 유풍이 있습니다. 뜻밖에 난리가 누차 일어나서 흥적이 서울을 함락시켜 전하께서 남쪽으로 갔었습니다. 이것을 말하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난리를 겪은 후이라 백성들의 생활이 극도로 곤란하니 마땅히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어 남은 백성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¹⁵¹⁾

라고 상소하며 팔관회 준비과정에서 백성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고려 후기 피폐한 경제상황하에서 팔관회의 위상이 하락한 만큼 국가의례 중 가장 많은 비용과 준비가 들어가는 팔관회는 백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I-②) 신돈이 팔관회에서 왕을 대리하여 여러 신하들의 축하를 의봉루에서 받았다.¹⁵²⁾

위의 상황은 승려였던 신돈이 팔관회에서 공민왕 대신 국왕의 자리에 앉아 관료들의 조하를 받았던 기록으로 조하의식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우왕과 창왕을 고려 국왕인 王氏의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I-③) 우리나라는 태조가 삼국을 통일한 이래 자자손손이 계승하여 오다가 공민왕에 이르러 불행히 후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하여 祖宗이 어렵사리 이룩한 대업이 辛氏에게 돌아가 왕통이 단절되고 왕씨의 宗廟가 16년간이나 제사를 받지 못하였으며 아래에서는 인민이 원망하고 위에서는 신명이 노하고 있습니다.¹⁵³⁾

151) 『高麗史』 권112 列傳25 白文寶. “上疎言事曰 國家世守東社 文物禮樂 有古遺風 不意寇患屢作 紅巾陷京 乘輿南狩 言之可謂痛心 今當喪亂之後 民不聊生 宜霽寬恩 以惠遺黎”

152) 『高麗史』 권132 列傳45 叛逆6 辛屯. “屯於八關會 攝王受群臣朝 于儀鳳樓”

153) 『高麗史』 권118 列傳31 趙浚. “我國家自太祖統三以來 聖子神孫 繼繼相承. 至于玄陵 不幸絕嗣 祖宗艱大之業 歸于辛氏 國統中絕 王氏之廟 不得血食者 十有六年 民怨於下 神怒於上”

I-④) 신우와 신창은 우리 왕씨의 왕위를 훔쳤으니 실로 조종의 죄인이며 왕씨의 자손들, 신하들, 백성들의 공동의 원수입니다. 그의 일족 인척 일당에 대하여는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먼 곳으로 귀양 보내 사람과 신령의 마음을 통쾌하게 할 것입니다.¹⁵⁴⁾

위의 사료는 趙浚과 鄭道傳이 개혁에 대한 상소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우왕과 창왕에 대한 문인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당시 고려를 개혁하고자 했던 신진관료들은 이들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팔관회의 조하의식은 이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이후에도 이들이 작성한 팔관하표의 기록이나 팔관회에 참석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1389년(공양왕 원년) 팔관회 날에 우왕이 축제로 소란한 틈을 타 왕위회복을 위한 반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한 사건이 발생한다.

I-⑤) 진 대호군 金佇와 진 부령 鄭得厚가 몰래 黃驪府로 가서 우왕을 만났다. ... 우왕이 울면서 말하기를, “내가 울적해서 견디지 못하겠다. 이대로 여기서 죽기를 기다릴 수야 있느냐? ... “이번 팔관회 날에 거사하라. 성사하면 왕비의 동생을 처로 삼아 주고 부귀를 같이 나누겠다.”라고 하였다. 김저가 曠叢보에게로 와서 그 말을 고하였다. 曠叢보가 그 자리에선 거짓으로 승낙을 하고 곧 태조에게로 가서 고발하였다. ... 이에 신우를 江陵으로 옮기고 창을 강화로 추방하여 평민으로 만들었다.¹⁵⁵⁾

李成桂는 八關小會日에 참석하지 않아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팔관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어 공양왕을 즉위 시키면서 문인들은 적극적으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그러나 불교에 의지하여 국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했던 기존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고 공양왕은 각종 佛事를 일으켰으며 무속행사 또한 빈번하게 설행되었다.

154) 『高麗史』 권119 列傳32 鄭道傳. “禍昌竊我王氏之位 實祖宗之罪人 而爲王氏子孫臣庶所共讎也 其族姻黨與 不加刑誅 則屏諸四裔而後 快於人神之心”

155) 『高麗史』 권137 列傳50 辛禡5[辛昌]. “前太護軍金佇 前副令鄭得厚 潛往黃驪 謁見禡 ... 禡泣謂曰 ‘不堪鬱鬱 居此 斂手就死 ... ‘今八關日 可舉事 事成 妻以妃妹 富貴共之’ 佇來告忠輔 忠輔陽諾奔告太祖 ... 於是 遷禡于江陵 放昌于江華 廢爲庶人”

J-①) 왕은 演福寺의 塔殿을 조성하려고 경기와 양광의 백성을 시켜 나무 5천 그루의 운반을 명령하였다. 소들은 모조리 다 죽었고 백성이 심히 원망하고 있었다. 정도전은 그 폐해를 역설하였다.¹⁵⁶⁾

J-②) 전하(공양왕)는 즉위 직후에 演福寺의 탑을 수축하면서 민가 30~40호를 철거시켰고 지금 또 탑을 대대적으로 세우면서 빈번히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일이 분주한데 交州의 모든 道에서는 나무를 베고 또 실어 나르느라 사람들과 가축들이 극도로 쇠약해져도 조금도 돌보아 주지 않습니다. … 국가 비용의 낭비가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을 것이며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것도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¹⁵⁷⁾

J-①과 ②는 1390년(공양왕 2)에 연복사의 탑전을 증축하는 과정에서의 폐해를 역설하는 내용으로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복사는 태조 때 만들어진 10개의 사찰 중 하나로 공민왕대에 연복사탑이 증축될 당시에도 많은 경제적 폐단을 일으켜 반대하는 건의가 많았다. 당시 사찰은 불법적으로 寺院田을 확대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으며 寺院寶의 운용과정에서도 고려대를 취하며 경제문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불교를 배척하던 문인들에게 이런 과정들은 국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의 하나였으며 연복사탑전의 조성은 공양왕대 척불운동이 치열하게 전개하게 된 원인이기도 했다. 고려 말 척불운동은 사원경제의 팽창과 승도과잉의 비생산성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파탄이 배경이었고, 科田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원경제의 해체를 이루지 못한 점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¹⁵⁸⁾

J-③) 제가 듣건대 三司의 會計에서 佛神을 위하여 쓴 것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하니 재정의 낭비가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 전하가 즉위한 이래 道場은 대궐보다 높이 솟아 있고 法席은 늘 절에서 열렸으며 道殿에서 醮祭가 무시로 열립니다. 모독스러운 무당의 제사는 빈번합니다.¹⁵⁹⁾

156) 『高麗史』 권119 列傳32 鄭道傳. “王欲營演福寺塔殿 令京畿楊廣民 輸木五千株 牛盡斃 民甚怨之 道傳極言其害”

157) 『高麗史』 권120 列傳33 金子粹. “殿下即位之始 修廣演福寺塔 破民家三四十戶 今又大起浮屠 屢興土木之役 厥今農務方劇 而交州一道 斫木輸材 人畜盡悴 曾不小恤 欲以徼 … 糜費國用 莫甚於此 歛怨于民 亦莫甚於此”

158) 이정주, 앞의 글, 2007, 93-94쪽.

159) 『高麗史』 권119 列傳32 鄭道傳. “臣聞 三司會計 佛神之用 居多焉 財用之妄費者 莫斯若也 … 殿下即位以來 道場高峙於宮禁 法席常設於佛宇 道殿之醮無時 巫堂之祀煩瀆”

鄭道傳은 三司의 會計 가운데 불교행사에 쓰는 비용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국가재정의 낭비가 심해 경제적 빈곤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불교에 대해 ‘선비를 현혹시키고, 윤리와 풍속을 무너뜨리며, 가산을 기울여 파산 시키고, 父子를 헤어지게 한다. 사람들은 禽獸로 돌아가고 도탄에 빠져 고생하는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¹⁶⁰⁾라며 불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당시 불교가 안고 있던 사회적 폐단에 대한 그의 시각을 알 수 있다.¹⁶¹⁾

J-④) …불교의 말도 믿을 수 없는데 더구나 기괴하고 황당무계한 무당들의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나라 안에 巫堂을 두는 것이 벌써 정당치 못한 일인데 소위 別祈恩이라는 곳이 10여 개소나 되고 일 년 사철의 제사와 그리고 무시로 있는 別祭 등 1년간 낭비를 이로 열거할 수 없습니다. 제사 때에는 비록 금주령이 엄격하나 여러 무당들이 때를 지어 다니면서 나라의 행사라고 핑계를 대니 해당 관리들도 이것을 감히 힐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큰 거리에 모여서 태연자약하게 술타령을 하며 북을 치고 피리를 불고 노래하고 춤추는 등 못하는 것이 없으니 풍속이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바라옵건대 해당 기관에 명하여 祀典에 기재된 제사를 제외하고 淫祀는 일체 금지하며 여러 무당들의 궁중 출입을 엄금하고 妖妄을 근절하여 풍속을 바로잡기 바랍니다.¹⁶²⁾

J-④는 성균관 유생 金子粹의 상소문으로 당시 성균관 유생들의 불교와 무속에 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불교와 도교, 무속의 의례를 淫祀로 배격하고 이들을 한데 묶어 없애야 할 폐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불교와 토속신앙 숭배의 성격이 복합된 팔관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불교행사와 淫事의 남발은 결국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였던 급진개혁파들의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하여 종래의 국가의례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을 언급하며 개혁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鄭道傳 등의 개혁파 문인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불교행사를 남설하거나 불사

160) 鄭道傳, 『上鄭道可書』. “毀倫滅理 風俗頹敗 傾家破產 父子離散 其禽獸之歸 塗炭之苦 亦不可既矣”

161) 정수동, 「여말선초 유학자들의 불교인식」, 『동아시아불교문화』12,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 219-220쪽.

162) 『高麗史』 권120 列傳33 金子粹. “… 浮屠之說 猶不可信 况怪誕荒幻之巫覡乎 國中設立巫堂 既 爲不經 所謂別祈恩之處 又不下十餘所 四時之祭 以至無時別祭 一年糜費 不可殫記 當祭之時 雖 禁酒之令方嚴 諸巫作隊 托稱國行 有司莫敢詰焉 故崇飲自若 九街之上 鼓吹歌舞 靡所不爲 風俗不美 斯爲甚矣 乞明勅有司 除祀典所載外 一禁淫祀 痛斷諸巫出入宮掖 以絕妖妄 以正風俗”

를 남발하는 문제에 더 집중하였고, 따라서 사원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는 궁극적으로 불교의 경제적 기반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J-⑤) 옆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유관 관리에게 명령하여 祀典에 실린 것을 제외하고 妖怪에 미혹하거나 산천 귀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행동을 일체 금지하면 재물이 절약되고 낭비가 없어질 것입니다.¹⁶³⁾

鄭道傳은 유교 이외의 禮制를 비판하며 祀典에 기록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혁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지속적인 혁파의견의 개진은 전제개혁과 더불어 일정정도의 사원경제 축소를 가져왔고, 고려 말 절기행사로 하락한 팔관회는 국가경제 운용상 사원경제 폐단이 가져온 부정적인 기능이 부각되어 조선 건국과 함께 폐지되었다.¹⁶⁴⁾

163) 『高麗史』 권119 列傳32 鄭道傳. “伏望 殿下申明有司 除祀典所載外 凡淫怪詭瀆之舉 一皆禁斷 則財用節而無所妄費矣”

164) 『朝鮮王朝實錄』太祖 권1 八月 甲寅. “都堂請罷八關燃燈”

IV. 결론

고려의 팔관회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고려 전기에 설행된 팔관회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 오면서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른 사회상의 변화와 더불어 일정 정도의 성격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팔관회의 인식 또한 달라졌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고려 왕실이 팔관회를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으며 팔관회는 어떤 기능으로 그에 부합했는지 정치·사회·경제적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팔관회의 재원마련을 위한 팔관보 운영과 폐단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고려 후기 팔관회가 일정부분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본 후 당시 문인지식층의 팔관회 인식에 대해 경제적 폐해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당시 지식인층이었던 문인들의 생각을 살펴보는 것도 그 시대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태조는 후삼국 통일 후 민심을 규합하고 각 지방의 호족세력과 여러 계층간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장치로 국가의례를 주목 하였으며 팔관회가 갖는 정치·경제·사회적 기능은 그 역할에 부응하면서 고려의 사상과 문화가 집약된 국가축제로 설행되었다. 팔관회의 의례 중 조하의식과 백희가무에는 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질서 속에서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국가축제의 성격, 문화교류의 장, 사회 통합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기저에는 고려의 다원적 천하관이 흐르고 있었다. 이는 팔관회의 조하의식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팔관회를 통해 이루어진 국제교류는 고려 문화가 한층 더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백희가무를 통해 팔관회가 왕실 행사로 국한되지 않고 보다 많은 대중이 참여하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축제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演戲에는 고대의 제천의례와 토속 신앙적 내용이 포함되어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역사적 기능도 갖고 있었다. 이런 諸기능들은 팔관회가 고려 소시기동안 설행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그러나 규모가 가장 큰 국가의례였던

만큼 막대한 경비와 인원이 필요했고 사회가 혼란하고 왕권이 약할수록 팔관회의 의식은 더욱 화려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그 부담은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국가는 팔관회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팔관보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대몽항쟁 이후 국가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고 이후 사원과 권력층의 토지탈점과 이에 따른 백성들의 유망은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국가는 빈번한 과렴과 공납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公私를 불문하고 불법적인 고리대가 성행하여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더욱이 팔관회의 과도한 지출에 따른 비용 마련을 위해 ‘寶’는 원래의 공공적 성격과는 달리 고리대로 변질되어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을 가져왔다.

고려 후기 권력층이었던 무인들은 왕을 내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장으로, 대몽항쟁기에는 국가적 결집을 필요로 했기에 강화천도라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국가의례로 팔관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원 간섭기에 이르러 고려는 황제국에서 元의 제후국으로 위치가 격하되면서 국제적 관계를 지향했던 팔관회의 위상도 함께 낮아져 단순한 절기 행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찰에서 불교행사로 치러지면서 팔관회의 고유한 성격이 퇴색된 채, 긍정적인 기능보다는 정치·경제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었다.

14세기 이후 온건개혁파들은 전제개혁을 반대하며 기존의 高麗的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원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팔관회 자체를 문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팔관회의 비용 마련과 공물 납부를 떠안았던 백성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려 말 더 이상 사회의 지도 이념이 되지 못했던 불교와 더불어 사원경제의 비대화는 급진 개혁파들에게 개혁정책의 한계를 느끼게 하였으며 전제개혁과 척불론을 제기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척불운동은 사원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불교의 경제적 기반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팔관회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었고 이미 절기 행사로 전락하여 사찰에서 설행되고 있었던 만큼 이들의 개혁 내용에는 불교행사로 변질된 팔관회도 淫祀로 규정되어 祀典을 제외한 혁파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참고문헌>

1. 史料

『高麗史』 『高麗圖經』 『高麗史節要』 『東文選』 『三國史記』 『宋史』
『朝鮮王朝實錄』 『東國李相國集』 『牧隱詩稿』 『破閑集』 『三峰集』 『補閑集』

2. 著書

김용선, 『고려 묘지명 집성』, 한림대학교출판부, 2012.
김창현,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2011.
도현철, 『고려말 사대부의 정치사상 연구』, 일조각, 2002.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국역 고려사』, 경인문화사, 2009.
박용운, 『고려시대사』, 일지사, 2008.
14세기 고려사회 성격 연구반,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 민음사, 1994.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여원관계사연구팀, 『譯註 元高麗紀事』, 선인, 2008.
이정주, 『性理學 受容期 佛教 批判과 政治·思想的 變容』, 고대 민족문화연구
원, 2007.
한국역사연구회, 『고려의 황도 개경』, 창비, 2002.

3. 研究論文

김동철, 「상업과 화폐」, 『한국사』14, 국사편찬위원회, 2003.
김복순, 「신라와 고려의 사상적 연속성과 독자성」, 『한국고대사연구』54권, 한
국고대사학회, 2009.
김원화, 「선유락을 통한 가무백희 연구」, 『한국체육학회지』제50권 제4호, 한국
체육학회, 2011.
김창숙(曉吞), 「불교적 연희의 개최와 그 양상」, 『한국불교학』제38집, 한국불교
학회, 2004.

- 김철웅, 「고려전기 祀典의 형성과정」, 『사학지』37, 단국사학회, 2005,
- 김혜숙, 「高麗 八關會의 內容과 機能」, 『역사민속학』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1999.
- 김효분, 「연등회와 팔관회의 무용사적 의의에 관한 고찰」, 『한국무용연구』제16집, 한국무용연구회, 1998.
- _____, 「팔관회에서 연행된 춤 연구」, 『한국체육학회지』제40권 제4호, 한국체육학회, 2001,
- 노명호, 「동명왕편과 이규보의 다원적 천하관」, 『진단학보』83, 진단학회, 1997,
- _____,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한국사연구』105, 한국사연구회, 1999,
- 도광순, 「팔관회와 풍류도」, 『한국학보』21집, 일지사, 1995.
- 도현철, 「고려말기 사대부의 불교인식과 대응」, 『역사와 현실』20, 한국역사연구회, 1996.
- _____, 「원·명 교체기 고려 사대부의 소중화 의식」, 『역사와 현실』37, 한국역사연구회, 2000.
- 박경안, 「고려전기 다원적 국제관계와 국가·문화 귀속감」, 『동방학지』129호, 연대국학연구원, 2005.
- 안계현, 「팔관회고」, 『동국사학』4, 1956.
- _____, 『한국불교사상사연구』, 동국대출판부 재수록, 1983.
- 魚江石, 「高麗 後期 文人의 元 文化 受容과 意識 變化」, 『개신어문연구』20호, 개신어문학회, 2003,
- 이민홍, 「고려조 팔관회와 예악사상」, 『대동문화연구』30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5.
- _____, 「高麗時代 漢詩文에 形成된 八關會의 實相」, 『반교어문연구』7호, 반교어문학회, 1996.
- 이병희, 「사원전」, 『한국사』14,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이봉춘, 「고려후기 불교계와 배불논의의 전말」, 『불교학보』27, 불교문화연구원, 1990.
- _____, 「성리학의 전래와 수용」, 『한국사』21,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이정희, 「세역제도와 조운」, 『한국사』14, 국사편찬위원회, 2003.
- _____, 「경제구조의 변화」, 『한국사』19, 국사편찬위원회, 2003.
- 이진한, 「高麗時代 宋商 貿易의 再照明」, 『역사교육』104, 역사교육연구회, 2007.
- 장숙경, 「고려 무인정권하 문사의 동향과 성격」, 『한국사연구』,84호, 한국사연구회, 1981.
- 장은영, 「고려 팔관회의 관광축제 특성」, 『관광학연구』제28권 제2호(통권47호), 한국관광학회, 2004.
- 전영준, 「고려시대 팔관회의 실행과 국제문화교류」, 『다문화콘텐츠연구』8호,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0.
- _____,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와 재현양상」, 『역사와교육』14, 역사와교육학회, 2012,
- 정수동, 「여말선초 유학자들의 불교인식」 『동아시아불교문화』12,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2,
- 채응석, 「12, 13세기 향촌사회의 변동과 ‘민’의 대응」, 『역사와현실』3, 한국역사연구회, 1990,
- _____, 「원간섭기 성리학자들의 화이관과 국가관」, 『역사와현실』49호, 한국역사연구회, 2003
- 추명엽, 「고려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현실』43, 한국역사연구회, 2002,
- 최병헌, 「불교사상과 신앙」,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 최윤영, 「한국 중세 궁중연회의 공간 연구」, 『한국연극학』27, 2005.

4. 학위논문

- 김형우,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3.